





| SRI-정책-2019-10 |

#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A Study on the Child Impact Assessment on Suwon City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백서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손보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7월 25일  
**발행** 2019년 7월 31일  
**ISBN** 979-11-89160-76-0 (933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9.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많은 지방정부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이 아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도구로 아동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과 제도, 예산 등이 아동권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수원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 II.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 1. 평가목적

아동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란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정책 영역들에서 수원시 아동의 기본 권리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평가대상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둘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셋째, 해당 연도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넷째, 그 밖에 수원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3. 평가유형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한다.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의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등 사업의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이다.

아동영향평가 정도에 따라 일반아동영향평가와 심층아동영향평가로 구분한다. 일반아동영향평가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지 담당부서의 자체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루어진다. 심층아동영향평가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지 부서 외 아동참여기구, 외부 전문가 등 심층적인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평가이다.

### 4. 평가주체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의 주체는 담당부서(또는 사업부서)와 평가부서(또는 총괄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의 경우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평가부서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 보육아동과가 해당된다. 평가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평가표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평가방법

아동영향평가는 단일 방법(mono-method)이 아닌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6. 평가지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참여에 대한 고려,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아동의 권리보장은 ①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②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③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참여는 ① 계획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②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③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는 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②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 Ⅲ.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

효과적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적실성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② 아동친화 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제도화, ③ 수원시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아동영향평

가 대상 선정시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에 따른 사업, 조례, 예산 등 포함, ②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아동 및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③ 아동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 공개, ④ 아동영향평가 결과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필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구체적으로 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 검토, ②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③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실시 등이다.

주제어: 아동권리, 아동친화정책,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 정책평가

---

## 차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7
<b>제2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b> .....	<b>9</b>
제1절 아동친화도시 .....	11
1. 아동권리 .....	11
2.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	13
3.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현황 .....	17
제2절 유사 영향평가 .....	20
1. 영향평가의 개념 .....	20
2. 성별영향평가 .....	22
3. 인권영향평가 .....	29
제3절 아동영향평가 .....	33
1. 아동영향평가의 의미 .....	33
2. 아동영향평가의 주체 .....	38
3.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	39
4. 아동영향평가의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40
5.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	48
6.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및 절차 .....	49

<b>제3장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b> .....	<b>55</b>
제1절 사례분석의 틀 .....	57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	60
1. 스코틀랜드 .....	60
2. 서울시 강동구 .....	63
3. 서울시 성북구 .....	67
4. 서울시 송파구 .....	74
5. 서울시 종로구 .....	81
6. 부산광역시 .....	86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89
<b>제4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b> .....	<b>95</b>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	97
1. 평가목적 .....	97
2. 평가대상 .....	97
3. 평가유형 .....	98
4. 평가주체 .....	98
5. 평가방법 .....	98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수행 과정 .....	99
1. 사전아동영향평가 .....	99
2. 사후아동영향평가 .....	100
3. 심층아동영향평가 .....	101
제3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	102
1. 사전아동영향평가 지표 .....	103
2. 사후아동영향평가 지표 .....	107
<b>제5장 수원시 2019년 아동영향평가 분석 사례</b> .....	<b>113</b>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	115
1. 평가목적 .....	115
2. 평가주체 .....	115
3. 평가대상 .....	116

4. 평가지표 .....	117
5. 평가방법 .....	120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결과 .....	120
1. 갈등사항: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 .....	120
2. 권리보장 .....	121
3. 차별요인 .....	122
4. 의견수렴 .....	122
5. 기대효과 .....	123
6. 사후아동영향평가 .....	124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24
<b>제6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 .....</b>	<b>127</b>
제1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129
1.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	129
2. 아동친화 제도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제도화 .....	130
3. 수원시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	130
제2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	131
1. 평가대상 선정 .....	131
2.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제 마련 .....	131
제3절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	132
1.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 .....	132
2.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	133
3.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	133
<b>참고문헌 .....</b>	<b>135</b>

---

## 표 차례

---

〈표 2-1〉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	12
〈표 2-2〉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	19
〈표 2-3〉 영향평가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	21
〈표 2-4〉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23
〈표 2-5〉 성별영향평가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25
〈표 2-6〉 성별영향평가 계획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26
〈표 2-7〉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27
〈표 2-8〉 성별영향평가 방법 .....	28
〈표 2-9〉 잠재적 권리 종류 .....	30
〈표 2-10〉 인권영향평가 단계 .....	32
〈표 2-1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영향평가 개념 .....	34
〈표 2-12〉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37
〈표 2-13〉 UNICEF의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41
〈표 2-14〉 Taskinen(2006)이 제시한 아동영향평가 내용 .....	42
〈표 2-15〉 박영균·조흥식(2014)의 아동영향평가 지표 체계 .....	44
〈표 2-16〉 김규수·서영미(2018)가 개발한 아동영향평가 기초지표 .....	46
〈표 2-17〉 김규수·서영미(2018)가 개발한 아동영향평가 심화지표 .....	46
〈표 2-18〉 Sylwander(2001)가 제안한 아동영향평가 절차 .....	50
〈표 2-19〉 SCCYP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총괄영향평가 .....	53
〈표 3-1〉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65
〈표 3-2〉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	66
〈표 3-3〉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70
〈표 3-4〉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	71
〈표 3-5〉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76
〈표 3-6〉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	77
〈표 3-7〉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83
〈표 3-8〉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	84

〈표 3-9〉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88
〈표 3-10〉 국내 아동영향평가 주요 내용 .....	91
〈표 5-1〉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 .....	117
〈표 5-2〉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표 .....	119
〈표 5-3〉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우려 여부 .....	120
〈표 5-4〉 아동권리 분석 .....	121
〈표 5-5〉 아동의 최선의 이익 여부 .....	122
〈표 5-6〉 무차별의 원칙 여부 .....	122
〈표 5-7〉 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	123
〈표 5-8〉 홍보 여부 .....	123
〈표 5-9〉 기대효과 .....	123
〈표 5-10〉 사후아동영향평가 여부 .....	1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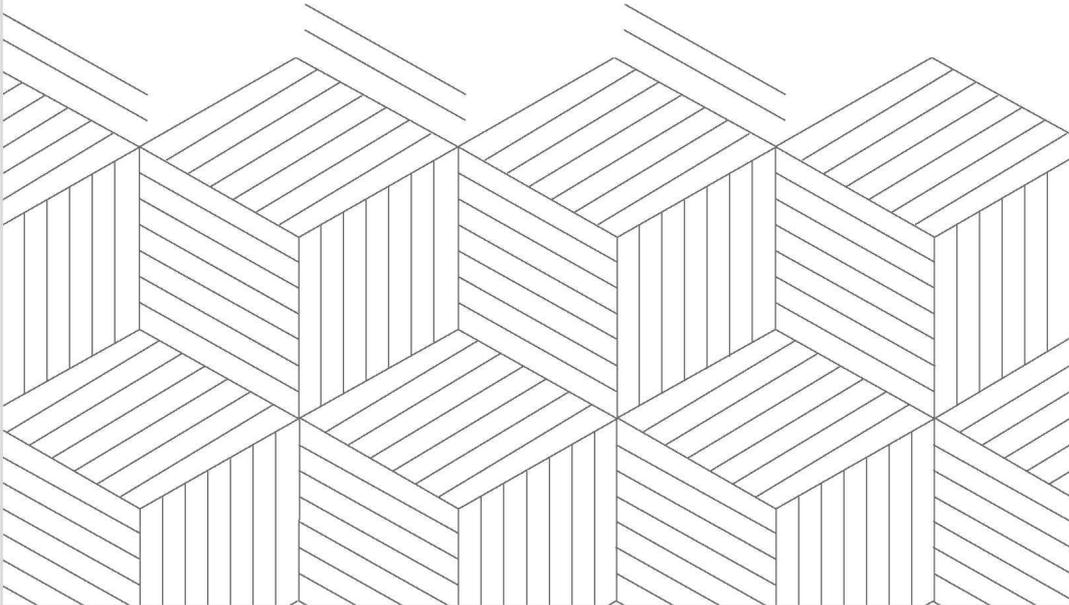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 그림 차례

---

〈그림 3-1〉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의 틀 .....	57
〈그림 3-2〉 서울시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	72
〈그림 3-3〉 서울시 성북구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	74
〈그림 3-4〉 서울시 송파구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	79
〈그림 3-5〉 서울시 송파구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	80
〈그림 4-1〉 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 체계도 .....	99
〈그림 4-2〉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 체계도 .....	100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필요성

UN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989)을 채택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기본권 실현을 강조한다.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폭력 등 유해행위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를 조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이후 2019년 6월 현재 총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담부서 신설 등 법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영안·이홍재, 2018, p.190).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앞서 언급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 또는 도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화 과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여야 하며,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아동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2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이 아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도구로 아동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UNICEF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영향평가가 필수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법, 정책, 예산편성, 업무수행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과정 및 실행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관련 법, 정책, 제도, 예산,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아동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영향평가 제도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박영균·조흥식, 2014, p.5).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과 제도, 예산 등이 아동권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결정자와 집행 담당자, 그리고 시민 등 정책이해관계자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조흥식·염태산, 2014). 이러한 이유로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가 다수 전개되고 있다(남승연·이나련, 2016; 박세경, 2016; 박영균·조흥식, 2014; 송이은, 2017). 「아동복지법」에서도 2016년 3월 개정 과정에서 아동영향평가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아동영향평가의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영향평가의 제도화 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에서는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을 통한 시범적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수원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를 제정하고, 2017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 계획에는 “아동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휴먼시티 수원”라는 비전과 “아동의 권리 강화

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6대 핵심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시행해오고 있다.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조례가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제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에서 시행중(또는 예정)인 아동 관련 조례,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적실성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의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아동영향평가의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수원시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친화정책, 아동영향평가 간의 이론적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의 제도적 배경 및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친화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은 국내 사례분석과 국외 사례분석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사례분석의 주요 내용은 아동영향평가 주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다.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영향평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수원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아동영향평가 제도(안)를 제시하고,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내용적 범위는 현재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수원시가 시행 중인 아동 관련 조례, 기본계획, 단위사업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 아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아동영향평가 체계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공간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수원시가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설정한다.

## 2. 연구방법

상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연구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문헌분석과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체계에 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과 적용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연구 보고서 및 학술논문, 통계자료, 그리고 관련 법률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수행한다.

둘째, 아동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한다. 사례분석의 목적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시범 실시를 위한 평가체계 및 향후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통계자료, 그리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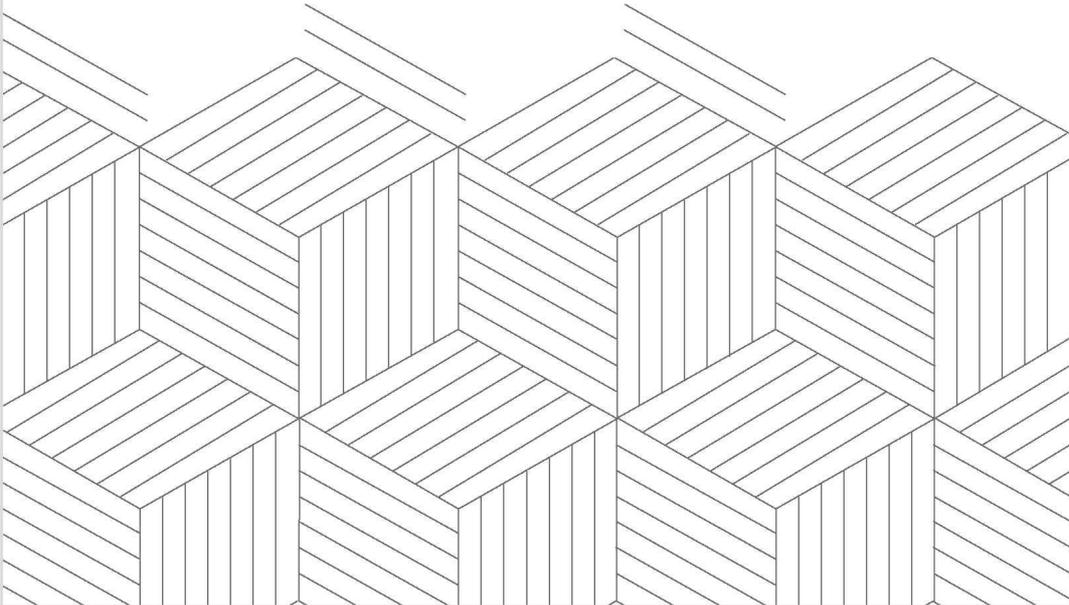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셋째,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시범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체계 개발 및 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우선 아동영향평가 시범 실시를 위한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단계에서는 평가영역 및 대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한 아동영향평가 결과 검토단계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최종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평가주체, 평가대상(영역 및 지표),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 내용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원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영향평가 체계의 내용과 과정에 관한 타당성 및 적실성을 제고한다.



# 제2장

##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친화도시  
제2절 유사 영향평가  
제3절 아동영향평가





## 제2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아동친화도시

#### 1. 아동권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정책대상인 아동과 아동권리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학술적 관점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UN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UNICEF에서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도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제3조)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UN과 「아동복지법」의 아동규정을 토대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권리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이영안, 2017a, p.6). UN은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삶의 질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적 틀인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권리들은 상호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권리이다. 아동권리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이다. 이는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과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섭취 등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수혜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이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과 학대 및 방

임, 폭력, 약물과 성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이다.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넷째,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이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 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표 2-1〉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 용	아동권리협약 관련 조항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제24조(건강 및 의료) 제26조(사회보장) 제27조(생활보장)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 제18조(아동이익 극대화) 제23조(장애아동의 보호)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및 모든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문화, 정보 활동 등을 누릴 권리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8, 29조(교육) 제31조(놀이와 오락, 문화활동)
참여권	자신 및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견표명)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7조(정보에의 접근)

자료: UNICEF자료; 박세경(2016, p.64)에서 재인용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이다. 모든 아동들은 부모님의 인종, 종교, 언어, 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다. 이는 아동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이다. 이는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 및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넷째, 아동의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의 원칙이다. 이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권리준수와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있다. 한국을 포함해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들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기의 원칙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물론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 1)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조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Riggio(2002)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well-being)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Malone(2004)은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과 서비스가 갖추어진 사회”로 규정하였다. 국내 연구로 홍승애(2013)는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과 제도,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정의하였다. 황옥경·김영지(2011)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김주일·김아래미(2016)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기반과 체계를 조성하는 도시 모델”로 정의하였다. 남승연·이나련(2016)은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

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UNICEF(2015)는 “UN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도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UNICEF(2015)는 아동친화도시가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개념은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영안·이흥재, 2018, p.190).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동 양성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조흥식·염태산(2016, p.5)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아동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기에 대한 투자이며, 창의적인 아동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내포한다(이영안·이흥재, 2018, p.190).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영안, 2017a, p.13).

아동친화도시 실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아동친화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아동친화정책은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보장 및 성장·발달 지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권위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이영안·이흥재, 2018, p.191). 아동친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동친화정책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노력이기 때문이다(Newell, 2003; Riggio, 2002). 아동친화정책은 아동친화적 법체계 및 예산 확보, 아동권리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아동영향평가 및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전략 개발 및 홍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아동권리 홍보와 아동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 아동의 참여 보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UNICEF, 2015).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아동친화정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과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이영안 외, 2019, p.25).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이해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정책이해와 정책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아동친화정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안·이홍재,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아동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친화정책에 관한 정책홍보의 중요성과 지역주민들의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를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영안·이홍재, 2018; 이영안 외, 2019).

## 2)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요건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사무국(Innocenti Research Centre, IRC)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체계와 활동을 포함한다(남승연·이나련, 2016, p.26). UNICEF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실현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참여이다. 아동과 관련된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역주민, 특히 부모들에게 권고되고 있는지, ‘아동의 견해 존중’이라는 개념이 아동은 물론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정 및 연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성인들에 의해 개발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동정책과 구분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인식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이다. 이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더불어 아동 관련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자문을 수렴하였는지, 지역 당국의 법과 정책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및 일반 원칙(차별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아동의사 반영)을 중시하는 지를 검토하였는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문, 변호 및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예: 아동권리 옴부즈맨 제도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지역의 아동 정책이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와 결핍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지, 지역의 아동 정책 실행 과정의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시계열적인 목표지수를 수립하고 있는지 등은 아동친화적 법체계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 전략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권리에 관련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권리 전담기구이다.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권리 전담기구는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제도적 장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수요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과정을 전담하는 추진 체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촉진하고,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조정을 책임지고 아동전략 초안 작성 및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지, 해당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권위는 어떠한지, 해당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이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아동들의 견해가 아동친화정책에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담기구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동영향평가이다. 정책 또는 사업, 조례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 계획, 추진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과 정책이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와 더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 과정이 존재하는지 등은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평가제도와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정책, 사업, 기타 관련 제도가 개발, 시행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아동 관련 예산 확보이다.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아동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다른 예산 분배와 비교해볼 때 공평한지, 아동 예산 분배의 내용이 공개되는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하는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을 위한 예산 증대와 아동권

리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이다. 아동의 권리실태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아동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수요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아동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기적인 아동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친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덟째, 아동권리 홍보이다.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많지 않다. 많은 주민들이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개선과 아동친화도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남승연·이나련, 2016).

아홉째,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이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아동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UNICEF 한국위원회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해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현황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의 결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에서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안녕이 건강한 도시, 민주사회,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평가지표’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UNICEF는 각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현재 유럽과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2013년)을 받은 이후 2019년 6월 현재 총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외에도 총 8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9월에 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의 아

동친화도시 인증 현황은 <표 2-2>와 같다.

아동친화도시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UNICEF 한국위원회는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 효율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전국적 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로 지리적, 행정적 경계와 상관없이 다른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원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UNICEF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첫째,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전에는 아동친화도시 준비 및 추진, 인증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가입할 수 있어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인증 이후에는 효율적인 홍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상호협조를 장려하고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와 실패사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국제협력 기능을 들 수 있다.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교육, 국제적 연대감 조성, 세계 아동 현황 보고 등 국제적 이슈 공유와 아동권리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표 2-2〉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CFC 인증연도	인구수(명)	아동수
경기도	광명시	2018년 3월	345,565	70,962
	수원시	2017년 9월	1,214,305	247,612
	시흥시	2019년 4월	431,255	79,768
	오산시	2017년 5월	207,596	51,000
	화성시	2018년 6월	644,498	160,795
경상북도	영주시	2017년 12월	110,780	17,232
광주광역시	동구	2019년 4월	96,369	14,556
	서구	2017년 8월	308,064	61,170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7년 10월	335,245	32,383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6년 9월	248,211	34,965
	부산광역시	2019년 5월	3,519,401	539,436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7년 3월	465,834	74,628
	강북구	2018년 9월	326,958	42,315
	강서구	2017년 12월	588,559	94,167
	광진구	2018년 3월	310,319	39,080
	노원구	2018년 2월	579,324	111,131
	도봉구	2016년 11월	353,409	54,150
	서대문구	2018년 5월	315,778	44,662
	성동구	2018년 2월	298,202	43,244
	성북구	2013년 11월	464,176	84,013
	송파구	2016년 12월	664,176	87,574
	양천구	2019년 5월	471,783	81,108
	종로구	2017년 8월	154,856	20,55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9월	192,661
인천광역시	동구	2018년 8월	71,144	10,775
	서구	2017년 11월	504,606	103,450
전라남도	광양시	2018년 1월	152,296	32,127
	순천시	2018년 2월	281,590	58,132
전라북도	군산시	2016년 10월	278,444	58,322
	완주군	2016년 1월	91,990	17,536
	전주시	2017년 6월	654,138	131,055
충청남도	당진시	2018년 3월	165,374	30,856
	아산시	2017년 11월	309,306	65,241
충청북도	음성군	2018년 4월	95,956	17,205
	충주시	2017년 8월	208,173	37,708

자료: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최종검색일자: 2019년 6월 1일

## 제2절 유사 영향평가<sup>1)</sup>

### 1. 영향평가의 개념

최근 정책이나 사업의 영향에 관한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 검토한다(이영안, 2017b, p.14).

일반적으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란 의사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Bonwitt, 2001). 영향평가는 현재 또는 제안된 활동의 미래결과를 식별(identifying)하는 활동이다(IAIA, 2015, p.85). OECD(2010)는 정책영향평가를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계획된 정책수단의 비용, 결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책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강현수 외(2012)는 영향평가를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화하는 모든 평가”로 정의한 바 있으며(강현수 외, 2012, p.8), 이준일 외(2015)는 “일정한 국가작용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그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기곤(2013)은 영향평가를 정책형성 및 집행 상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절차”로 정의하였다(김기곤, 2013, p.54).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처인 여성부(2003)에 따르면 영향평가란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들을 추정하여 효과를 비교하여, 최선의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평가”로 정의한 바 있다(여성부, 2003, p.33). 이영안(2017b)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영향평가를 사전적 측면에서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이영안, 2017b, p.14).

1) 유사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이영안(2017b)의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표 2-3〉 영향평가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영향평가의 개념
IAIA(2015)	현재 또는 제안된 활동의 미래결과를 식별하는 과정
Bonwitt(2001)	의사결정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OECD(2010)	정보에 기반하여 계획된 정책수단의 비용, 결과, 부작용 등을 평가하는 것
여성부(2003)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결과들을 추정하여 효과를 비교하고, 최선의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평가
강현수 외(2012)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화하는 모든 평가
김기곤(2013)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특정 정책이 해당 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절차
이준일 외(2015)	일정한 국가작용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그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
이영안(2017b)	정책, 사업,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평가하는 활동

자료: 이영안(2017b, p.14)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영향평가는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영향평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영안, 2017b, p.15). 첫째, 영향평가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IAIA, 2009, p.1; 강현수 외, 2012, p.8).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정책수립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강현수 외, 2012, p.8). 영향평가에서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하나의 원인, 그로 인한 영향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수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여성부, 2003, p.34).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IAIA, 2009, p.1). 넷째, 정책분석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강현수 외, 2012, p.8). 정책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의 영향을 상호 관련시켜 정책과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여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정책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영안(2017b)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행정의 효과성과 합법성, 조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첫째, 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또는 부서)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향평가는 합법성(legitimacy)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영향을 사전 점검하는데 기여한다. 결국 영향평가는 정책영역에 대한 평가로 법률이나 조례, 정책, 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영향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는 영향평가가 정책이나 행정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기곤(2013)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심각한 반대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김기곤, 2013, p.55).

셋째, 영향평가는 법률이나 조례, 정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단기 정책, 사업,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여성부, 2003, pp.34-35). 이는 영향평가가 관련 정책들 간의 사전적 조정(coordination)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영향평가는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 기준을 토대로 수행되기 때문에 논쟁이나 갈등 소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김기곤, 2013, p.55).

아래에서는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분야별 영향평가 제도에 관해 검토한다.

## 2. 성별영향평가

### 1)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항).

여성가족부(2016a)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6a, p.3).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특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을 통해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p.3).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및 2003년 등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2018년 3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로 다시 개정하고, 제15조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정의(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평가대상(제5조), 고려사항(제6조), 시기(제7조), 평가결과의 반영(제9조), 교육(제15조) 및 자문(제16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4>와 같다.

<표 2-4>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985호, 2018, 12.18 개정] [시행 2019. 06. 19]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7.>

■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 03.27 개정] [시행 2018. 09. 2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성별영향평가의 주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가족부의 평가지침을 토대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성별영향평가법」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②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시행령 제2조 2항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① 시행 중인 법령, ②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4) 성별영향평가의 내용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체계는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개정 법령

제·개정 법령의 평가체계는 3개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6b, p.43).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표 2-5〉 참조).

〈표 2-5〉 성별영향평가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이 있는지 점검”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특정 성별의 명시(용어, 조치 포함)가 성역할 고정 관념을 반영한 것인지 점검” -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성별 특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 또는 시설 설치, 통계·실태조사 등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를 점검”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영안(2017b, p.55)에서 재인용

## (2) 계획

계획의 평가체계는 2개 평가영역-4개 평가지표-5개 세부 평가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비전과 목표, ② 전략 및 중점과제 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6b, p.44).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와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첫째, 비전과 목표 영역은 성별영향발생 가능성을 평가지표로 구성한다. 세부 평가지표로는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전략 및 중점과제 영역은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을 포함하는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성별 요구도는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지”를 활용한다. 성별 형평성은 “수

해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을 세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셋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은 “법령 반영 계획”,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표 2-6〉 성별영향평가 계획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 점검내용
비전과 목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4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반영 계획	법령 반영 계획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내용을 이영안(2017b, p.57)에서 재인용

### (3) 사업

사업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2개)-평가지표(5개)-세부 평가지표(6개)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②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6b, p.45).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2-7〉 참조).

첫째,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영역은 사업의 성별 요구도와 사업의 성별 형평성이라는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사업의 성별 요구도는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지”를 활용한다. 사업의 성별 형평성은 “사업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를 반영하는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를 반영하는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둘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영역은 ‘법령’, ‘예산’ ‘사업’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법령은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을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로 측정한다. 예산은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사업은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한다(이영안, 2017b, pp.57-58).

〈표 2-7〉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 점검내용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사업의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li> </ul>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 지”</li> <li>-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 비율이 단순히 50 : 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사업의 성별 형평성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li> </ul>
		법령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예산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사업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li> </ul>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의 내용을 이영안(2017b, p.58)에서 재인용

### 5)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는 대상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수행된다.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 6) 성별영향평가의 단계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의 평가지침을 토대로 총 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표 2-8〉 참조).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 통보단계로 여성가족부에서 연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을 통보하면(1단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2단계), 해당 법령·사업·계획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서를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평가책임관에게 제출(3단계),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4단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제출(5단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을 이행하고, 한 해 동안의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후(6단계, 7단계),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8단계)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6b, p.47).

〈표 2-8〉 성별영향평가 방법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 통보(여성가족부)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공표(여성가족부)
↓	↑
대상과제 선정(중앙·지자체)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	↑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제출(중앙·지자체)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다음해 2월) (중앙·지자체)
↓	↑
검토의견 통보 [원안동의/개선의견]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의견 반영계획 제출(중앙·지자체)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영안(2017b, p.58)에서 재인용

### 3. 인권영향평가

#### 1)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s Assessment: HRIA)는 정책, 입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World Bank & Nordic Trust Fund, 2013). 이영안(2017b)은 인권영향평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인권재단(2016)은 인권영향평가를 “기업의 사업이나 활동(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및 측정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존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평가이다(Baxewanos & Werner, 2013; 한국인권재단, 2016, p.21에서 재인용). 인권영향평가는 긍정적인 요소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고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며, 부정적인 요소는 사전에 방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표가 있다(World Bank & Nordic Trust Fund, 2013; 강현수 외, 2012).

####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인권영향평가의 주체는 내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된다(이영안, 2017b, pp.20-21). 내부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 자체평가의 경우 정책,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지닌다(이준일 외, 2015, pp.17-18). 이외에도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다.

외부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나 제3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이다.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중립성은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 상황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확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

이처럼 내부기관에 의한 자체평가와 재3자에 의한 외부평가의 장단점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인권영향평가의 실행을 위해 내부 기관과 민간의 외부 전문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평가체계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영안, 2017b, p.20).

### 3)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국가작용이다(이준일 외, 2015, p.14).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 사업, 프로젝트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발래, 2013, p.182).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르면 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②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③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영안, 2017b, p.21).

### 4)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인권영향평가 내용은 아래의 <표 2-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 분야, 환경·복지 분야, 시민·정치 분야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의 세부 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교육,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 규약, 국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에 근거한다(강현수 외, 2012, p.9).

<표 2-9> 잠재적 권리 종류

노동 분야	환경·복지 분야	시민·정치 분야
1. 일할 권리	1. 삶에 대한 권리	1. 재산에 대한 권리
2. 양호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	2. 적정생활기준에 대한 권리	2. 모욕적인 대우
3.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3. 물에 대한 권리	3. 처벌로부터의 자유
4. 아동노동으로부터의 자유	4. 보건에 대한 권리	4. 임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5.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5.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5. 사상의 자유
6.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보수를 받을 권리	6. 음식에 대한 권리	6. 표현의 자유
7. 비차별	7. 주거에 대한 권리	7. 집회의 자유
8. 조합에 속할 권리	8. 신변안전에 대한 권리	8. 종교의 자유
9. 파업에 대한 권리	9. 사생활에 대한 권리	9. 교육의 권리
10. 결사의 자유	10. 거주자의 자유	10. 공론, 정치적 참여의 권리
11.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11. 원주민의 권리	

자료: 강현수 외, 2012.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 5)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인권영향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된다(강현수, 2013, p.5; 한국인권재단, 2016, p.35). 사전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이다. 본격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에 대한 임시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한국인권재단, 2016, p.36). 사전평가는 앞으로 수행될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준일 외, 2015, p.14). 사전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단시간 안에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김형완, 2016, p.48).

사후평가는 이미 수행된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활동이 인권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강현수, 2013, p.5). 사후평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형완(2016)은 사후평가 결과가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김형완, 2016, p.48).

## 6) 인권영향평가의 단계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는 목적이나 대상, 또는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준일 외, 2015, p.13; 강현수, 2013, p.5). Word Bank와 Nordic Trust Fund는 인권영향평가를 9단계로 구분한다(Word Bank & Nordic Trust Fund, 2013, pp.21-32). 인권영향평가 단계는 i) 준비, ii) 선별, iii) 범위 설정, iv) 증거수집, v) 자문, vi) 분석, vii) 결론 및 권고, viii) 모니터링 및 평가, ix)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는 인권영향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별단계(screening stage)는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가장 높은 활동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범위 설정단계(scoping stage)는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활동범위와 평가과정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 설정, 평가지표 개발 및 인권 실태 파악 단계이다. 증거수집 단계(evidence gathering stage)는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 단계이며, 자문단계(consultation stage)는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자문을 받는 과정이다. 분석단계(analysis stage)는 활동 범위를 보완하고, 인권에 대한 현실적 영향과 잠재적 영향을 실제 평가하는 과정이다. 분석이 마무리되면 인권에 대한 영향의 전반적인 결론 도출과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결론 및 권고 단계(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stage)로 이어진다.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monitring and evaluation stage)는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 및 권고수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작성 단계(preparation of the report stage)는 평가결과 및 권고,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영향평가 단계를 ① 준비, ② 점검, ③ 착수, ④ 결과, ⑤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 등 총 5단계로 구분한다(한국인권재단, 2016, p.41). 준비단계는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을 숙지한 후 평가에 착수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고, 점검단계는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기 전 문제 규명, 스크리닝, 범위 설정, 기초선 조사 등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착수단계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단계이며, 결과적용 단계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단계는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이다(한국인권재단, 2016, p.41).

이외에도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IBLF)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은 인권영향평가 단계를 ① 준비, ② 확인, ③ 참여, ④ 사전평가, ⑤ 완화, ⑥ 관리, ⑦ 사후평가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Abrahams & Wyss, 2010, pp.34-59).

〈표 2-10〉 인권영향평가 단계

구분	단계	세부단계
한국인권재단(2016)	5단계	준비→점검→착수→결과적용→모니터링 및 평가보고
Abrahams & Wyss(2010)	7단계	준비→확인→참여→사전평가→완화→관리→사후평가
인권영향평가 자료센터	8단계	실제 인권 상황 평가→정치적 맥락 분석→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관점 개발→핵심 질문 선정→정책 대안과 행동 선정→정책과 행동 결정→모니터링→최종적 평가
World Bank & Nordic Trust Fund	9단계	준비→선별→범위 설정→증거수집→자문→분석→결론 및 권고→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작성

자료: 이영안, 2017b.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p.26

### 제3절 아동영향평가

#### 1. 아동영향평가의 의의

##### 1)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라는 개념은 Freeman(1987)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개념이다. Freeman(1997)은 정책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검토·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후 몇몇 학자들에 의해 아동영향평가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Hanna와 그의 동료들은 그동안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정책의 장에서 아동 가시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Hanna et al., 2006, p.32). 이는 아동영향평가의 개념적 정의보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동영향평가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Sylwander(2001)는 아동영향평가를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혹은 그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Corrigan(2006)은 아동영향평가를 “법령이나 장기 계획, 세부단위 사업 등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유형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로 설명한다(Corrigan, 2006, p.7). Whalen과 그의 동료들은 “정책, 입법 또는 기타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모든 잠재적, 직·간접적 영향들을 밝히고 분석, 평가하는 도구”로 정의하였다(Whalen, Kotze, and Pollack, 2015, p.2).

국내 연구인 박영균·조흥식(2014, p.16)은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그 상태를 규정짓거나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하여 미리 마련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나 수준을 따져보아야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서영미(2016)는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법령, 프로젝트나 혹은 제안 같은 것이 결국 어떤 특정한 집단의 아동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아동영향평가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제10조2)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법령 또는 제안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영향평가 개념

연구자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Hanna et al. (2006)	“그동안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장에서 아동 가시성을 높이는 것”
Sylwander(2001)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혹은 그 조합”
Corrigan(2006)	“법령이나 장기 계획, 세부단위 사업 등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유형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
Whalen et al. (2015)	“정책, 입법 또는 기타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모든 잠재적, 직·간접적 영향들을 밝히고, 분석, 평가하는 도구”
박영균·조흥식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그 상태를 규정짓거나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하여 미리 마련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나 수준을 따져보아야 하는 일”
서영미(2016)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법령, 프로젝트나 혹은 제안 같은 것이 결국 어떤 특정한 집단의 아동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

아동영향평가의 기본 가정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 제도, 예산자원, 다양한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예산배정, 업무수행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사업 등이 집행된 후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향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세부 단위사업, 장기계획 관련 법령의 수립 및

집행, 종료 단계에 걸쳐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파악한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부정적인 영향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Corrigan, 2006; UNICEF, 2004).

## 2) 아동영향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아동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확산, 홍보,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 정책결정자, 공무원, 기업, 정책(또는 사업) 집행자 등의 아동권리 이해 증진 및 정책에 대한 책무성 제고, 아동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완화 또는 해소, 아동과 이해당사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실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Paton & Munro, 2006; 박영균·조홍식, 2014).

상기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박세경, 2016; 송이은, 2017). 첫째,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아동과 관련된 법률 또는 조례, 계획,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진단하고 개선시킴으로써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주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특정 아동 집단의 배제를 최소화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아동 요구를 반영시킴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제고 등 정책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아동영향평가는 정책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먼저 정책 및 유관기관 간 조정기능을 통해 정책효율이 실현될 수 있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증진이라는 합의된 기준 하에 정책조정이 가능하다. 아동영향평가는 부처 간 조율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접근을 촉진시키고, 여러 경쟁하는 이익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송이은, 2017, p.15).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기준과 범위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오류와 정책실패를 감소시킴으로써 정책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분포하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공유하면서 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행동계획을 수

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박세경, 2016, p.72).

셋째, 아동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송이은, 2017, p.15).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을 포함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정책과는 달리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에 의해 직간접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행된다.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의 개선을 통한 정책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를 토대로 창출·축적된 정보는 아동 관련 정책시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된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13).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관련 정책이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담당자와 평가부서 간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정책의 민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은 아동친화도시 또는 아동 관련 정책의 핵심 대상(target)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3)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영향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의 마련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2019년 1월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위탁 및 평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표 2-12〉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2019, 01.15 개정] [시행 2019. 07. 16]**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6. 3. 22.] [시행일 : 2019. 7. 16.]

**■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06.11 개정] [시행 2019. 07. 16]**

제12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대상·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시행일 : 2019. 7. 16.] 제12조의2 제6항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에는 2016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장에서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조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제도화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동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

한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도 아동영향평가를 규정한 바 있다.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에 관한 조례」는 아동영향평가를 “군산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아동영향평가의 주체

아동영향평가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동영향평가의 주체와 관련해 김규수·서영미(2018)는  
공무원, 전문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로 구분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무원 범주에는  
담당부서나 평가부서가 포함되고, 전문가 범주에는 유아교육, 보육 또는 아동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에는 영유아 및 아동이, 이해관계자 범주에는 부모와 교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박영균·조흥식(2014)은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  
동영향평가는 “어떤 사람이 아주 전문가일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두 사람 이상이 할 것을  
권장하며 평가자는 분석모델과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아동 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라는 규  
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동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아동보호  
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사회보장기관, 보육과 건강 센터기관 관련자, 그리고 심리학자 등  
이 포함된다(박영균·조흥식, 2014, p.73).

최근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권리보  
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1월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10  
조의 2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는 주요 역할 또는 기능은  
①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②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  
획 평가 지원,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④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⑤ 아동보  
호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⑥ 아동학대  
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⑦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  
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  
반 구축 및 정보 제공,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⑧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⑨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⑩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⑪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⑫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⑬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의 내용 참조). 아동권리보장원은 스코틀랜드가 UN 아동권리협약 의무를 이행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3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이하 SCCYP)의 목적 및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3.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평가대상은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평가해야 할 영역 또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영향평가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 새로운 입법이나 규칙의 제정,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예산 수립, 지역사회 모든 범위에서 조직이나 행정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된다.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균·조홍식(2014)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첫째, 국가의 주요 정책, 법규, 조례, 주요 계획 중 아동과 관련 있는 정책, 둘째,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규수·서영미(2018, p.170)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동 관련 해당 법·조례 규칙, 장기계획, 단위사업이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아동 관련 정책의 기획, 시행, 진행, 종료 전 과정, 아동 관련 중장기 계획, 아동 관련 정책의 예산안 편성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규수·서영미, 2018, p.170; 박영균·조홍식, 2014, pp.156-157).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률,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 내용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계획의 경우에도 아동영향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제15조 3항), 예를 들어 보건, 복지 영역의 중장기 계획이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인권도시(정책) 기본계획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계획 수립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사전에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확보 수단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세출 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은 복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단위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과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세부사업이 너무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하여 단위사업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므로(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외)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평가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영균·조홍식, 2014, p.157).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세출세부사업 기획부서가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된 근거를 정리하여 아동영향평가부서에 이관하며,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하는 민간사업 중에 아동에게 피해 또는 부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계획도 아동영향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가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아동영향평가 관련 연구들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15; 박영균·조홍식, 2014, p.152). 이에 따라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관련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 아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박영균·조홍식(2014)은 아동영향평가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증진과 협약 이행을 위한 방안 도출의 사회적 학습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경험이 축적된 뒤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활동(법률, 예산, 사업, 계획)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박영균·조홍식, 2014, p.152). 특히 초기에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학습을 위해 일반정책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시범 평가도 유용할 수 있다(박영균·조홍식, 2014, p.152).

#### 4. 아동영향평가의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역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이는 평가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체계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아동영향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평가영역, 평가기준 또는 평가지표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UNICEF는 아동친화도시 선정기준에서 아동영향평가 관련 자가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ICEF에서 제안한 평가지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3〉 UNICEF의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UNICEF의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 조례, 정책,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나올 때 이것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2.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영향평가가 영향을 미치는가?
3. 정기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행하는가?
4. 이 평가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가?
5. 이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가?

스코틀랜드의 아동커미셔너(SCCYP)가 제안한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에서도 아동영향평가의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SCCYP에 따르면 초기 스크리닝 평가(initial screening assessment)에서는 ① 정책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가, ②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이나 기타 정책이해관계가 참여하는가, ③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없는가, ④ 아동인권을 고려한 최고의 수단을 사용하는가 등이 핵심사항이다(Paton & Munro, 2006, p.19).

한편 총괄영향평가(full impact assessment)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관련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 집단과 아동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SCCYP는 특정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아동의 인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권을 잘 보장하는가, 특정 집단의 인권이 특히 영향을 받는가, 아동 집단 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UN 아동인권협약과 배치되는가? 아니면 이 협약을 촉진하는가, 예상 영향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는가,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여타 정책 영역이나 의제(agenda)에 주는 총 영향은 무엇인가 등이다(Paton & Munro, 2006, p.19).

Taskinen(2006)은 핀란드의 아동영향평가 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내용이 직접적 영향평가인가, 간접적 영향평가인가에 따라 내용이 부분적으로 상이함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직접 또는 간접 영향평가의 판단여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나 가족구성원, 공동체와 지역사회,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인지와 관련된다. 직접적인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 등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평가에서는 변화의 양, 방향, 질 모두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영향평가의 내용은 건강, 사회적 관계, 삶과 이동성, 일상의 흐름, 참여, 평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 등이 부모나 가족, 공동체와 지역,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간접영향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가족재정과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사회관계로 구분된다. 영향평가 유형별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Taskinen, 2006: 15).

〈표 2-14〉 Taskinen(2006)이 제시한 아동영향평가 내용

유형	영역	평가내용
직접적 아동 영향 평가	건강	① 정책이 사고 리스크를 늘리는가 또는 줄이는가 ② 정책이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가(먼지, 냄새, 가스, 방사능) ③ 정책으로 소음이 증가하는가 또는 줄어드는가 ④ 정책이 아동의 영양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사회적 관계	① 정책은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가 ② 정책은 부모이외 어른들과의 접촉기회를 증진시키는가 ③ 정책이 아동의 교우 관계와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④ 정책은 자연스럽게 각기 다른 연령 집단이 함께 있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삶과 이동성	① 아동은 방해 없이 등갓길이나 놀러갈 때 이웃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② 정책은 장애 아동의 이동 기회에 영향을 주는가 ③ 아동의 자발적 스포츠 참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④ 집과 이웃의 편안함이나 건강이 개선되었는가 ⑤ 아동이 놀고, 이동하고, 삶을 영유할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는가
	일상의 흐름	① 정책이 아동의 취침/기상시간/일상 리듬에 영향을 주는가 ② 아동은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는가 ③ 아동이 반복적으로 기다리게 되는가 ④ 아동이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을 제공받는가 ⑤ 취미활동의 기회가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 ⑥ 정책이 아동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⑦ 정책은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는가
	참여	①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② 아동이 더 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③ 아동은 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된다고 느끼는가
	평등	① 정책이 아동의 지역적 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② 정책이 아동의 사회적 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③ 정책이 남녀 아동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④ 정책이 인종/문화적 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유형	영역	평가내용
간접적 아동 영향 평가	가족 재정과 서비스	① 고용이나 실업이 증가했는가 ② 가족 생활비가 변화했는가 ③ 공적/사적 서비스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건강, 주거와 레저, 교육, 교통, 쇼핑) ④ 서비스 수준과 가용성이 좋아졌는가(특히 보육, 학교, 모자 클리닉)
	공동체와 지역	① 가치, 규범, 행위에 있어 어떤 종류의 변화가 기대되는가 ② 삶의 질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③ 안전이 개선되었는가 ④ 여가의 기회가 늘어났는가 ⑤ 지역이 미적으로 아름다워졌는가 ⑥ 집값에 변화가 있겠는가 ⑦ 변화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는가
	사회 관계	① 사회적 관계나 인구집단의 지위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② 이익 집단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인가 ③ 지역 정체성이나 집단 의식이 증가할 것인가

자료: Taskinen(2006, pp.15-16)과 송이은(2017, pp.35-37)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아동영향평가 지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여가, 고용, 문화, 주택, 건강 등 이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평가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박영균·조홍식, 2014, p.87). 이외에도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의 평가지표로 아동을 우선시하여 계획된 사업 개발, 아동권리협약에서의 4가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보장 여부, 아동에 대한 차별해소의 정도, 사회 환경의 위험도 평가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생존권 영역은 생활수준, 주거환경, 건강 등 3개 지표범주, 19개 평가지표, 보호권 영역은 학대와 방임, 사회적 보호, 비행 및 위험행동, 청소년의 경제활동 등 4개 지표범주, 10개 평가지표, 발달권 영역은 교육, 보육(양육)서비스, 문화와 여가, 가족환경, 지역환경, 아동의 사회적 관계, 아동의 사회생활과 참여 등 7개 지표범주, 10개 평가지표, 참여권 영역은 권리이해, 권리행사, 정보획득 등 3개 지표범주, 3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박영균·조홍식, 2014, pp.158-159). 아동권리 영역별 평가지표범주와 세부 평가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15) 참조).

〈표 2-15〉 박영균·조흥식(2014)의 아동영향평가 지표 체계

영역	지표범주 및 지표구성항목	지표 제안
생존권	1. 생활수준 1) 아동·청소년의 빈곤율 2) 복지급여 수급여부 3) 생활필수품의 부족 4) 미성년 가구 5) 보호자의 고용불안정	① 빈곤율(상대·절대), 차상위계층 여부 ② (아동·청소년)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연령대별 현황 ③ 식품, 도서·학용품, 기초적인 가재도구의 부족 ④ 미성년 가구수 및 발생원인별 현황 ⑤ 가구 내 성인의 실직, 정규직 여부
	2. 주거환경 1) 적절한 공간의 확보여부 2) 설비 부족 3) 불안정주거 4) 주거환경의 안전성 5)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	① 공간의 협소, 공동생활주택 ② 난방, 수도, 화장실, 전기 전화 설치 여부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노숙, 유랑 ④ 보행안전(보행환경, 야간보행 안전), 교통안전(어린이 교통사고발생건수), 사회안전(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재해/재난 안전 ⑤ 주거여건 만족도, 자연환경(녹지·공원비율), 대기·수질·녹지 여건 만족도
	3. 건강 1) 사망률 2) 안전사고 3) 의료서비스이용 4) 질병 5) 영아건강 6) 장애 7) 생활습관 8) 정신건강 9) 전반적 건강상태	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어린이 사고·사망(총계, 원인·연령·장소별 현황) ②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안전사고(장소별, 품목별) ③ 의료시설(병상·의료인력 수), 입원·외래진료, 건강보험여부, 예방접종, 대기자명단에 있는 아동의 수 ④ 만성질환, 총치 ⑤ 저체중, 모유수유, 산전 진료, 임신 중 약물 사용 ⑥ 장애수당, 등록장애아의 수 ⑦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결식률·결식이유), 영양상태, 비만도, 신체활동(규칙적인 운동여부) ⑧ 자신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행복도, 우울, 자살생각, 정신건강서비스 ⑨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염려도, 건강문제로 인한 잦은 결석, 평소 피로 인식도,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
보호권	1. 학대와 방임	① 아동·청소년학대 발생률, 조치결과, 재신고현황, 방임(방과후 방치)
	2. 사회적 보호 1) 아동·청소년 보호 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3) 아동·청소년 상담	① 요보호아동(수, 발생유형, 보호유형), 청소년 쉼터·그룹홈 현황 ②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이용 현황 ③ 아동·청소년 상담소 현황, 고민사항, 상담실적, 청소년 긴급전화 이용 현황
	3. 비행 및 위험행동 1) 학교폭력 2) 약물사용 3) 범죄 4) 성적 위험 5) 유해매체·유해환경	① 학교폭력(아동·청소년 폭력, 따돌림): 실태 현황, 피해·가해 경험률, 단속현황 ② 흡연, 음주, 환각물질, 마약류 등 ③ 강도·절도·기물파손, 교정시설(소년원, 보호관찰 현황) ④ 성경험, 피임율, 10대 출산율, 미혼모 현황, 성병,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현황 ⑤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정화구역 내 업소현황

영역	지표범주 및 지표구성항목	지표 제안
발달권	4. 청소년의 경제활동	① 청소년 취업자,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관련 인권침해 현황
	1. 교육 1) 학업성취 2) 교육참여율 3) 공교육 4) 사교육	① 교육과정별 시험점수, PISA 평균점수, 국어/영어/수학점수, 학업스트레스 ② 취학률, 출석률, 졸업률, 유급률, 비활동(N.E.E.T) 청소년 비율 ③ 교육 관련 공적지출,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학교만족도, 학교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수교육 현황 ④ 사설학원수, 사교육비용·수준·접근성
	2. 보육(양육)서비스	①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보육 서비스 현황(시설현황, 아동·청소년현황, 이용률, 서비스의 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3. 문화와 여가	① 지역 내 여가시설(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 시설)
	4. 가족환경	① 한부모가정, 부모의 학력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소유한 도시의 양
	5. 지역환경	① 학교 밖 활동(방과후 교육 여부), 어린이 놀이터(이용만족도, 개선점), 지역사회만족도,
	6.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① 가족·부모·친구와의 관계/관계에 대한 만족, 이웃 간의 신뢰관계
참여권	7. 아동·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참여	①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역문화행사 참여율, 국제교류 현황
	1. 권리이해	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인권의식 수준 평가
	2. 권리행사	① 자기결정권, 교칙제정에 참여, 의견존중의 경험, 개인적 네트워크
	3. 정보획득	② 행정정보 획득매체

자료: 박영균·조흥식(2014, pp.158-159)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김규수·서영미(2018)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로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 기초지표와 심화지표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된 4대 권리영역에서 아동정책 구분에 따른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정책 추진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표를 반영하였다(김규수·서영미, 2018). 아동영향평가 기초지표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김규수·서영미(2018)가 개발한 아동영향평가 기초지표

구 분	항 목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	①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갈등우려 ② 영유아·아동·청소년 법규, 기타 법규, 타 조례와 갈등 우려
아동최우선의 이익	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 고려 ② 아동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여부
아동 견해의 존중	① 아동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② 아동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또는 반영하기 위한 장치 마련
무차별	①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 유무
지자체 특수성 반영	① 지자체 특수성에 따라 아동 제반 권리 반영 사항
효율성	① 관련 기관과 현장의 협조체계 효율성
실현가능성	① 집행계획, 예산, 인력의 전문성 등의 실현 가능성
홍보	① 아동과 이해관계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의 홍보
사후평가	① 사후아동영향평가의 필요여부

자료: 김규수·서영미(2018, p.17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아동영향평가 심화지표 체계는 관리지표 영역과 권리영역, 그리고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 영역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정책 추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관리지표 영역은 권리지표와 정책지표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심화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표 2-17〉 김규수·서영미(2018)가 개발한 아동영향평가 심화지표

구 분	항 목
미래를 준비하는 삶	권리 지표 ① 양육제공의 권리 ② 여가 및 놀이 향유 ③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④ 능력 및 자질 계발권 ⑤ 교육받을 권리 ⑥ 사회정의 교육권 ⑦ 종교선택의 자유 ⑧ 성인의 관심과 지도 ⑨ 책임 있는 성년기 교육권 ⑩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⑪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정책 지표 ⑫ 아동기 역량강화 ⑬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 ⑭ 놀이·여가 권리의 보장

구 분		항 목	
	참여권	권리 지표	①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② 아동의 의사반영 ③ 의사존중의 권리 ④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⑤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⑥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⑦ 시민적 자유권 ⑧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⑨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⑩ 애정표현의 권리 ⑪ 사생활권 ⑫ 정보제공권
		정책 지표	⑬ 아동의 참여권보장(1) 아동의 견해 존중 및 참여기회 확대 ⑭ 아동의 참여권보장(2) 기관 및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
건강한 삶	생존권	권리 지표	① 정신건강 서비스 ② 의료지원 및 서비스 ③ 건강하게 자랄 권리 ④ 생활수준 유지 ⑤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조 ⑥ 생명존중권 ⑦ 경제적 권리 ⑧ 공부할 장소
		정책 지표	⑨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⑩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안전한 삶	보호권	권리 지표	①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② 법정대리인(후견인) ③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④ 차별방지 ⑤ 전쟁비참가권 ⑥ 권리보장 ⑦ 유해한 노동금지 ⑧ 심리적 보호 ⑨ 신체적 보호
		정책 지표	⑩ 생활안전 ⑪ 사회안전 보호권 ⑫ 아동안전 체계 구축
함께 하는 삶	특별한 보호 조치	권리 지표	① 빈곤 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의 차별금지 ② 다중적 차별금지 ③ 생존과 발달에 기여하는 양질의 서비스에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 감독
		정책 지표	④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⑤ 사회적 보호·지원의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자료: 김규수·서영미(2018, p.17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은 연구자(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평가영역이 4대 아동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영역과 평가기준, 또는 평가지표는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가 불충분할 경우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평가영역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라고 할 수 있다.

## 5.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아동영향평가의 방법과 관련해 많은 학자들은 효과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기반한 평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Taskinen(2006)은 개별 아동에 적합한 표준화된 단일의 측정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평가대상과 필요에 따라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이 혼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나 편안함, 경험이나 일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론은 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질적 방법과 함께 양적 접근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Taskinen, 2006, p.9).

Krieger & Ribar(2009)는 아동영향평가의 실행 방법론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혼합적 접근이다. 아동영향평가는 양적, 질적 방법을 결합시켜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 데이터 분석이다. 여기에서 데이터란 기존 문헌이나 데이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동 빈곤이나 가구예산 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질적 분석이다. 질적 분석을 위한 포커스 그룹(focus group)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기존 양적 데이터 분석에서의 시사점들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추가적인 양적 서베이가 필요하다. 위의 질적 분석에서 도출된 함의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한 양적 조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반복적 분석이다. 앞에서 언급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결과물 또는 발견들을 상호 체크하여 계량경제적 모델링이나 지표의 개발, 결론이 각 접근방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rieger & Ribar(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좋은 아동영향평가는 양적, 질적 방법의 장점을 통합하여 이른바 혼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혼합적 접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송이은, 2017, p.25 재인용).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영향평가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을 것임을 예측하기도 한다(박영균·조흥식, 2014, p.152).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법령이나 제도, 조례, 사업 등을 평가할 경우 정성적 평가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일반 공무원 또는 사업담당자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간이평가지표의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박영균·조흥식, 2014, p.152).

한편 Mason & Hanna(2009)는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보수집방법에 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포커스 그룹, 인구와 지역 분석(양적, 질적), 시나리오 평가(양적, 질적), 건강 위험 파악과 분류(양적, 질적), 이해당사자 워크숍, 서베이, 핵심 정보보유자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평가, 델파이 기법(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가중치(weighting) 결정시 전문가 패널과 주요 의사결정자 참여), 환경 모니터링(양적, 질적), 리스크(risk) 평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은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Mason & Hanna, 2009, p.48). Mason & Hanna(2009)가 제시한 상기 내용은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양적, 질적 방법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및 절차

### 1)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아동영향평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단위사업의 수립 계획 단계에서 시행되는 평가이다. 사후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단위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법, 정책, 예산배정, 업무수행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후 실행 중에 평가할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에 관한 법과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정책, 사업 등이 집행 이후에도 미치게 될 실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박영균·조흥식, 2014, p.5).

### 2) 아동영향평가의 절차

아동영향평가의 과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계획, 기술, 분석, 검증,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Sylwander, 2001).

첫째, 계획단계는 아동영향평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다. 계획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에 관한 정보 수집, 평가방법 및 평가 양식, 검토의견 반영 등의 전반적인 아동영향평가의 과정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영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평가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떠한 평가기준이나 평가지표를 활용할 것인지, 평가양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향후 아동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둘째, 기술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대상에 대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진다. 기술단계에서는 예상결과와 평가목적의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분석단계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의견서 등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대상을 실제 분석하는 단계이다.

넷째, 검증단계이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분석이 끝나면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와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내용과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평가단계로 아동영향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섯째, 환류단계이다. 아동영향평가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도출되면 해당 단계로 환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2-18〉 Sylwander(2001)가 제안한 아동영향평가 절차

단계	절차	내 용
1	계획	- 아동영향평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 평가대상에 관한 정보 수집, 평가방법 및 평가 양식, 검토의견 반영 등의 전반적인 아동영향평가의 과정을 검토
2	기술	- 평가대상에 대한 내용 검토 - 예상결과와 평가목적의 구체화하는 과정
3	분석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의견서 등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대상을 실제 분석
4	검증	-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와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내용과 결과를 확인
5	평가	- 아동영향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6	환류	- 아동영향평가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 또는 보완 사항을 해당 단계로 환류

자료: Sylwander(2001)

스코틀랜드 아동커미셔너(SCCYP)는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절차는 초기 스크리닝 평가(initial screening assessment)와 총괄영향평가(full impact assessment)로 구성된다(Paton & Munro, 2006; 박영균·조홍식, 2014, p.162; 송이은, 2017, p.31). 초기 스크리닝 평가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초기 스크리닝 평가는 아동 대상 정책의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로 공식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초기 스크리닝만으로도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초기 스크리닝 평가만 수행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총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박영균·조홍식, 2014. p.162).

SCCYP가 개발한 총괄영향평가(full impact assessment)는 8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확인(identify) 단계는 아동영향평가의 내용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책의 내용에 따라 평가의 대상을 사안의 우선순위와 기존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초기 스크리닝(initial screening assessment)을 통하여 평가의 대상과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초기 스크리닝은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진행되며 몇 가지 핵심 사항에 관한 판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목적 및 내용,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무, 아동권리협약 또는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법, 추후 전체평가 진행여부 판단 등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2단계는 목표설정(map) 단계이다.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평가대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사항과 예상되는 결과 및 목표를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대상과 관련된 타 정책들과의 관련성은 물론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 책임자와 관련 이해집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3단계는 자료수집(gather) 단계로 아동영향평가 총괄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자료, 이전 영향평가 결과,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4단계는 자문하기(consult) 단계이다. 자문의 필요성 및 내용, 자문을 요청할 대상을 선정하고 아동,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견수렴 내용과 자문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5단계는 분석(analyse) 단계로 관련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관련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 집단과 아동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영향을 분석한다.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아동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아동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지, ② 특정 집단의 인권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지, ③ 아동 집단 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가, ④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은 UN 아동인권협약과 배치되지 않는지?, ⑤ 예상되는 향후 영향에 대해 의견 충돌은 없는지, 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는 무엇인지, ⑦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이 여타 정책 영역이나 의제(agenda)에 주는 총 영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6단계는 제안(recommend) 단계로 평가결과 및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하여 영향평가의 결론을 도출하고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이나 사후조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조치와 관련된 지침 등을 전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7단계는 공표하기(publicize) 단계로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와 평가를 통한 결론을 공표하는 과정이다. 평가주체는 직·간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아동 및 이해당사자, 평가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평가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아동영향평가 결과의 공표는 전문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전문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재량에 따라 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8단계는 모니터링(monitor) 단계로 아동영향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적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아동영향평가 이후에도 정책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SCCYP는 평가과정에 참여한 아동을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2-19〉 SCCYP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총괄영향평가

단계	절차	내용
1	확인 (identify)	- 초기 스크리닝을 통하여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결정 - 평가대상의 우선순위 확인
2	목표설정 (map)	- 정책의 내용, 예상되는 결과, 목표 기술 - 사회적 맥락과 배경, 타 정책과의 연관성 고려
3	자료수집 (gather)	-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집 -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
4	자문 (consult)	- 아동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아동의 의견수렴, 전문가 면접(FGI) 등 진행
5	분석 (analyze)	-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 아동의 다양한 특성 반영 - 차별 집단의 의견 청취
6	제안 (recommend)	- 결론 도출 및 권고사항 제시 - 사후조치 및 추가적인 검토 요구
7	공표 (publicize)	- 아동영향평가 결과 공표 -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아동 및 이해당사자에게 홍보
8	모니터링 (monitor)	- 모니터링을 통하여 영향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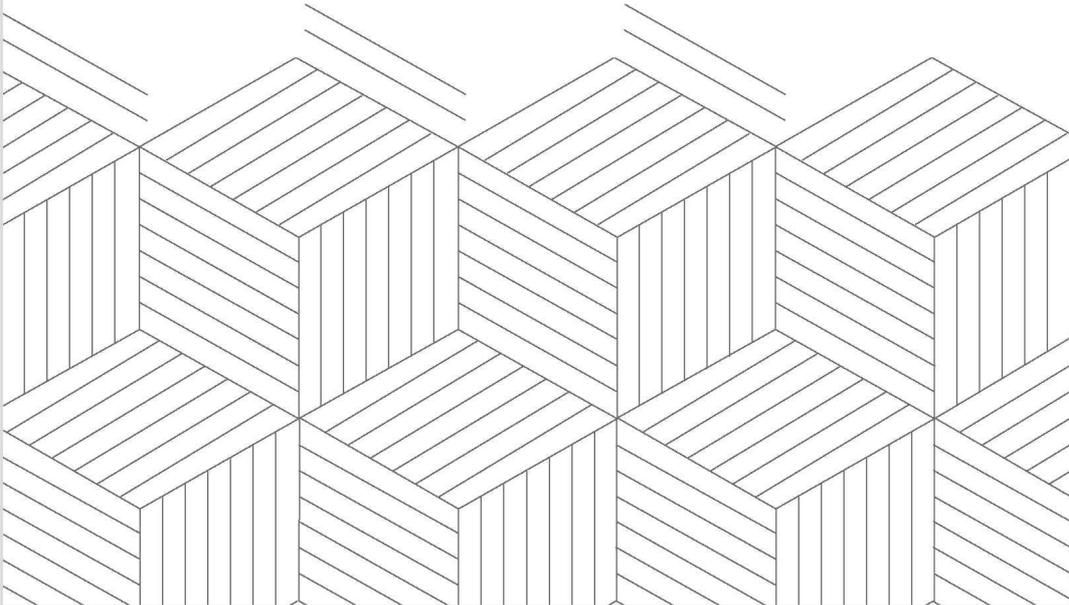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자료: Paton & Munro(2006), 박영균·조흥식(2014), 송이은(2017)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 제3장

##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틀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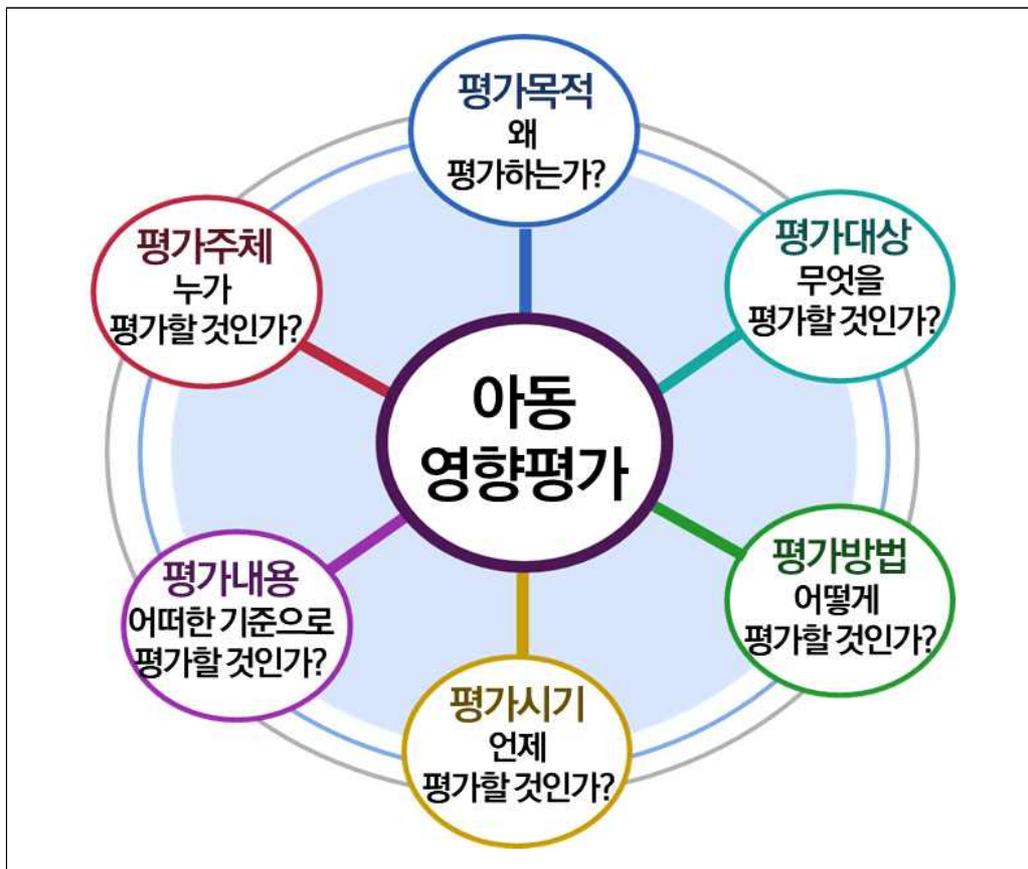


## 제3장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

### 제1절 사례분석의 틀

일반적으로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평가의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시기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위해 <그림 3-1>과 같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3-1>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의 틀



첫째, 평가의 목적이다. 아동영향평가를 왜 하는가(why?)에 관한 것이다. Goldenberg(1983)는 정책평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의 효과, 조직통제, 그리고 정치환경에 대한 영향력 등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동영향평가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률 등이 아동이나 특정 아동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아동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상기의 목적 하에 수행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주체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who?)에 관한 것이다. 아동영향평가 주체와 관련해서는 내부평가, 외부평가, 혼합평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부평가는 정책 또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평가와 평가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내부평가로 구분된다. 내부평가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 등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외부평가는 외부 전문가(교수 또는 연구원 등)나 외부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에 비해 공정성과 객관성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획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평가는 내부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또는 기관)가 공동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혼합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영향평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가 상기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평가대상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what?)와 관련된 것이다.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이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률이나 조례, 규칙의 제·개정 내용,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중장기 계획, 정부 세출 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평가대상의 선정과 관련해 사례분석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아동영향평가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아동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평가내용 및 지표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가영역과 평가기준 또는 평가지표는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가 불충분할 경우 특정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평가영역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영향평가에서 이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평가내용과 관련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평가지표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가 평가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특정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 또는 배제시킴으로써 아동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의 포괄성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한다.

다섯째, 평가방법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how?)와 관련된다. 아동영향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 혼합 방법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양적 방법론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률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한 영향평가이다. 질적 방법론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률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용분석,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합 방법론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가지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평가시기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언제 시행할 것인가(when?)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기를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유형화하면 사전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단위사업의 수립 계획 단계에서 시행되는 평가이고, 사후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단위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사전 또는 사후영향평가만을 시행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사전 및 사전영향평가를 모두 시행하는 아동영향평가도 가능하다.

##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 1. 스코틀랜드

#### 1) 개요: 평가목적

스코틀랜드는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을 통해 아동권리 및 삶의 질 영향평가(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 CRWIA)<sup>2)</sup>를 시행하고 있다. CRWIA는 법률, 정책 또는 조치가 필요한 아동 인권 및 복지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ottish Government, 2019, p.4). CRWIA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 및 지원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입법 등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cottish Government, 2019, p.4).

#### 2) 평가주체

스코틀랜드는 UN 아동권리협약 의무를 이행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아동청소년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이하 SCCYP)를 설립하였다. SCCYP의 조직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과 교육, 정책 담당, 커뮤니케이션, 법인 서비스로 구성되며, 스코틀랜드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과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한다(박영균·조흥식, 2014).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https://www.cypcs.org.uk/about>). 첫째,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둘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직접적 보호, 셋째, 정부와 다른 단체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다. SCCYP는 발의된 법안과 스코틀랜드 정부나 영국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제안한 정책, 그리고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외부 문의에 기반하여 CRWIA를 실시하고 있다(<https://www.cypcs.org.uk/about>).

2) 최근 스코틀랜드 아동영향평가 명칭이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에서 아동권리 및 삶의 질 영향평가(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로 변경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아동권리 및 삶의 질 영향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평가 대상 및 범위

CRWIA는 법안발의, 정책제안, 실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일과 업무, 예산결정 과정에서의 변동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박영균·조홍식, 2014). CRWIA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CRWIA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률도 포함되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포함된다(Scottish Government, 2019, p.4).

### 4) 평가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CRWIA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 시행에 반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제시한 아동 관련 정책의 산출체계를 살펴보면 안전(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방치 또는 위해로부터의 아동 보호), 건강(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유와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에 대한 지원), 성취(교육과정 중 기량,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원과 지도), 양육(거주하고 성장하는 장소가 양육에 적합하고 고무적이어야 함), 활동(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다양한 활동 참여), 존중(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책임(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참여), 소속(다양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가, 주거와 교육이 행해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인가)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Scottish Government, 2019, p.12).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권리 외에도 이를 토대로 하는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상태에 관한 내용도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평가방법

CRWIA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삶의 질을 고려한 이성적이고, 증거에 기초한 정책 및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cottish Government, 2019, p.13). 이에 CRWIA의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혼합한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양적 방법론으로 정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집단의 아동

및 청소년이 영향을 받는지 등을 평가한다. 질적 방법론으로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과 경험은 어떠한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다.

## 6) 평가시기

CRWIA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Scottish Government, 2019, p.6). 먼저 스크리닝(screening) 단계이다. 스크리닝 단계는 CRWIA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예비 점검이다.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① 정책 개요(정책명, 정책 목표, 정책 내용 등) 기술, ② 정책의 어떤 측면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③ 정책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④ 어떤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한다. 어떤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영향을 미치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이 개발되었을 수 있다. 스크리닝 단계에서 정책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CRWIA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에 스크리닝 단계는 정책영향에 대한 예비평가로 정식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송이은, 2017, p.31).

둘째, CRWIA 단계이다. CRWIA 단계는 총 9단계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① UN 아동권리협약 조항 중 어떤 조항이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② 정책이 아동권리에 어떤 영향(긍정, 부정, 중립)을 미칠 것인지, ③ 다른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다른 영향이 있는지, ④ 권리 또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평가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⑤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책산출(안전, 건강, 성취, 양육, 활동, 존중, 책임 및 소속)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⑥ 정책을 시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⑦ 평가에 어떤 증거를 사용하였는지, ⑧ 아동 및 청소년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⑨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아동 및 청소년의 견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등이다. CRWIA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UN 아동권리협약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한다. CRWIA의 5~6단계는 정책이 스코틀랜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정책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아동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 정책 제안사항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CRWIA의 7~9단계는 증거 기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CRWIA의 승인 및 결과 공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실시한 CRWIA

결과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이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2.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는 2016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강동구의 아동영향평가 목적, 대상 및 범위, 평가시기, 평가주체, 평가지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 1) 개요: 평가목적

서울시 강동구는 2016년 5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동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평가주체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주체는 크게 담당부서와 평가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 강동구 어르신아동복지과 아동정책팀에서 담당한다. 평가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심층영향평가 등을 운영한다.

### 3) 평가대상 및 범위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구청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셋째,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5

조).

실제 2016년에 실시한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소관부서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조례 및 규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 단위사업 중에서 아동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동영향평가 소관부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236개 사업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150개로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24).

#### 4)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서울시 강동구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평가는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지표는 <표 3-1>과 같다. ①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UN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청소년 법규, 또는 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는지, ②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는지, ③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④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⑤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⑥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 ⑦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⑧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⑨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⑩ 기타 등이 포함된다(이영안, 2017b).

둘째, 사후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표 3-2> 참조). ① 해당업무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② 해당업무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③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등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과의 관련성 여부, ④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 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성 여부, ⑤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등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이영안, 2017b).

〈표 3-1〉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 아동권리협약			
2) 아동청소년법규			
3)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2.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조고가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4.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5.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6.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까?			
7.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8.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1)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			
2)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			
9.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10. 해당 사업(계획, 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전문가자문, 아동의견수렴 등)			

자료: 김주일·김아래미(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표 3-2〉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권리 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해당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2. 아동권리 관련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4.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2)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3)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구민		
5.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2)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자료: 김주일·김아래미(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 5) 평가방법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지만 주된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강동구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후영향평가지 심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아동 및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결국 서울시 강동구의 아동영향평가의 방법론은 양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적 접근을 고려하는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 6) 평가시기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31). 첫째,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의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영향평가이다. 담당부서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검토하고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점검표 작성 후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검토하여 심층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31).

둘째, 사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이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부서는 사후영향평가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층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한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131). 해당업무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설문 또는 FGI를 진행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부서의 검토 의견을 일괄 검토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 3. 서울시 성북구

### 1) 개요: 평가목적

서울시 성북구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지난 2013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자치구 내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는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추진목적은 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산, ②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참여 권리 보장, ③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개선함으로써 아동 정책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서울시 성북구, 2018).

## 2) 평가주체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주체는 업무소관부서와 아동영향평가부서로 구분된다. 업무소관부서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업무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통해 평가대상 해당여부 검토, 아동영향평가 대상 해당시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영향평가부서의 권고 의견을 반영 및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영향평가부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담당한다.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점검표를 취합 및 평가,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 성북구는 평가주체인 업무소관부서와 아동영향평가부서 이외에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5조).

## 3) 평가대상 및 범위

서울시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둘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셋째,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넷째,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예외 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아동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4)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서울시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평가는 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표 3-3〉 참조). ①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지), ② 무차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③ 아동 최선의 이익(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④ 당사자 의견수렴(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⑤ 홍보(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⑥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 여타의 어린이/청소년 법규,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지), ⑦ 사후평가 필요성(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후평가는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와 같다. ①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② 무차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③ 아동 최선의 이익(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④ 당사자 의견수렴(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⑤ 홍보(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렸는지), ⑥ 결과물 대중에 알리기(해당 단위(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 존재하는지), ⑦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 여타의 어린이/청소년 법규,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은 없었는지), ⑧ 추가자문 필요성(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아동권리관련 추가적 자문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된다.

〈표 3-3〉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의 제반권리와의 관계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4)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2. 무차별			
1)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3. 아동 최선의 이익			
1)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4. 당사자 의견수렴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 홍보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6.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7. 사후평가 필요성			
1)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자료: 성북구(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표 3-4〉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의 제반권리와와의 관계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4)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2. 무차별			
1)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3. 아동 최선의 이익			
1)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4. 당사자 의견수렴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 홍보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렸는가?			
6. 결과물 대중에 알리기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 존재하는가?			
7.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			
1)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은 없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은 없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은 없었는가?			
8. 추가 자문 필요성			
1)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아동권리 관련 추가적 자문이 필요한가?			

자료: 성북구(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 5) 평가방법

서울시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 평가를 위해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기반하여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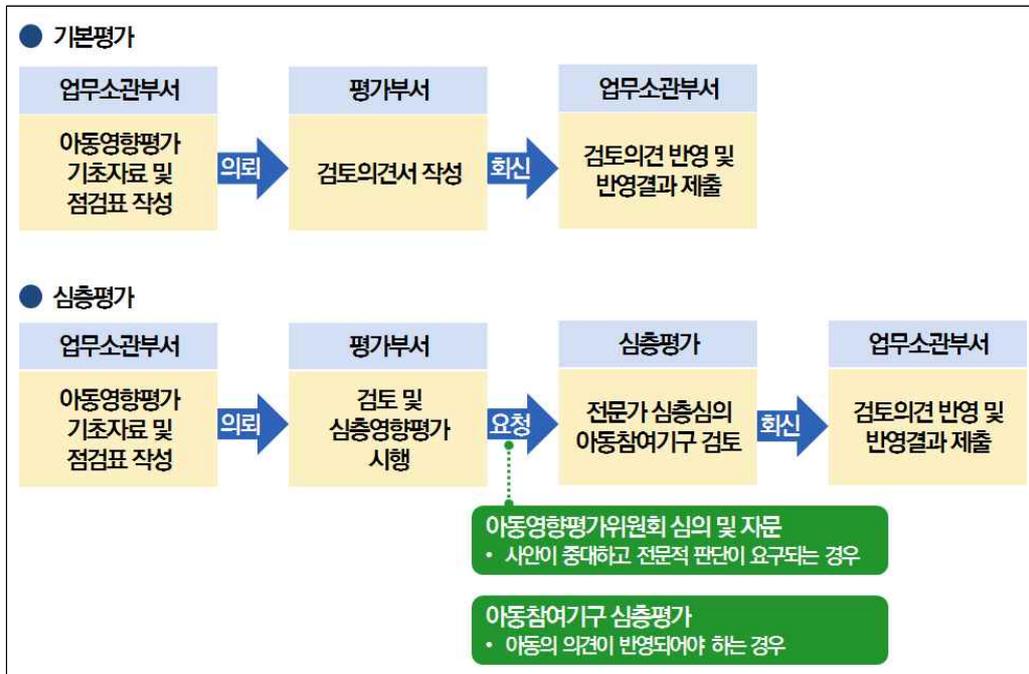
크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질적 방법론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전 및 사후평가 중 심층영향평가 진행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및 아동참여기구를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6) 평가시기

서울시 성북구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사전평가는 아동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반면 사후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시행 이후 아동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절차를 사전 및 사후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아동영향평가의 절차는 기본평가지 총 3단계인 반면 심층평가지 총 4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서울시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자료: 서울시 성북구(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먼저 기본평가의 경우 1단계는 업무소관부서 내 자체평가 단계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통해 평가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영향평가 대상 해당시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아동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2단계는 아동영향평가부서(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검토 단계로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점검표를 검토하고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을 업무소관부서에 전달한다. 3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 단계로 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반영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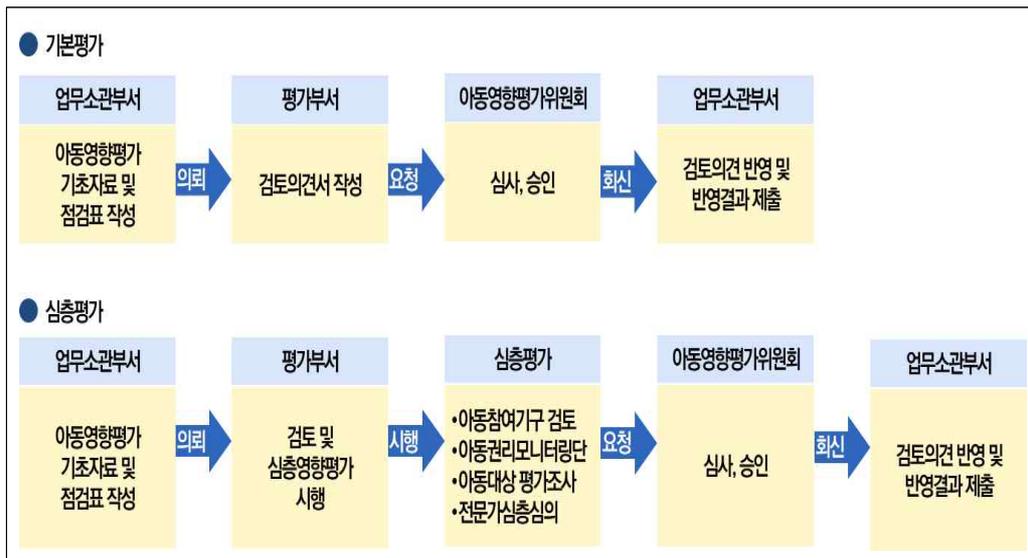
사전아동영향평가 심층평가는 기본평가의 1단계와 2단계는 동일하다. 3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심층 심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안이 중대성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아동참여기구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4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 단계로 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동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후아동영향평가의 절차도 사전평가와 유사하게 기본평가지 총 4단계, 심층평가지 총 5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그림 3-3〉 참조). 기본평가의 경우 1단계는 업무소관부서 내 자체 사후평가 단계이다. 사후평가자료 및 점검표를 토대로 업무소관부서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아동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2단계는 평가담당부서의 검토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영향평가부서가 업무소관부서 자체 사후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및 승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일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 단계로 업무소관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 후 시행하게 된다.

사후아동영향평가 심층평가는 기본평가의 1단계와 2단계는 동일하다. 3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심층사후평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심층사후평가를 진행한다. 심층사후평가 유형은 ①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 검토,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③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층 심의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검토, 아동권리보장 측면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점검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서 검토한다.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는 사업 종결시 평가조사를 수행하거나, 심층인터뷰, FGI 등이 해당되며,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층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단계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및 승인 단계이다. 심층평가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업무소관부서에 회신한다. 5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단계로 업무소관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한 후 시행하게 된다.

〈그림 3-3〉 서울시 성북구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자료: 서울시 성북구(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 4. 서울시 송파구

##### 1) 개요: 평가목적

서울시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 2) 평가주체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아동돌봄청소년과), 담당부서가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심

층영향평가를 운영한다.

### 3) 평가대상 및 범위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제5조).

실제 2016년에 실시한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조례, 사업, 예산 등 총 104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p.18).

### 4)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서울시 송파구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는 사전 및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첫째, 사전 평가는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와 같다. ① 아동·청소년의 제반 권리와 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청소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지), ② 무차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③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④ 당사자 의견수렴(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청소년·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⑤ 홍보(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청소년과 이해관계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⑥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 여타의 아동·청소년법규,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지), ⑦ 사후평가 필요성(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청소년영향평가가 필요한지), ⑧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표 3-5〉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b>1. 아동·청소년의 제반권리와 관계</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4)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b>2. 무차별</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이 특정 유형의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b>3.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b>4. 당사자 의견수렴</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 입안 시 아동·청소년·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청소년·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b>5. 홍보</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을 아동·청소년과 이해관계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b>6.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UN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여타의 아동·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b>7. 사후평가 필요성</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청소년영향평가가 필요한가?			
<b>8. 개선방안(아동·청소년권리침해방지과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b>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표 3-6〉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b>1. 아동·청소년의 제반권리와의 관계</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 생존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이 아동 보호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이 아동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4)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아동·청소년이 아동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b>2. 무차별</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이 특정 유형의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b>3.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b>4. 당사자 의견수렴</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기획, 조례나 규칙 제·개정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b>5. 홍보</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을 아동·청소년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렸는가?			
<b>6. 결과물 대중에 알리기</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 존재하는가?			
<b>7.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b>			
1)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UN 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은 없었는가?			
2)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여타의 아동·청소년법규와의 갈등은 없었는가?			
3) 해당 단위(세부) 사업, 조례나 규칙이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은 없었는가?			
<b>8. 추가 자문 필요성</b>			
1) 해당 단위(세부)사업, 조례나 규칙시행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추가적 조사나 자문이 필요한가?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둘째, 사후평가는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표 3-6〉 참조).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살펴 보면, ① 아동·청소년의 제반 권리와와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청소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② 무차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③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④ 당사자 의견수렴(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⑤ 홍보(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청소년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렸는지), ⑥ 결과물 대중에 알리기(해당 단위(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 존재하는지), ⑦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 아동권리협약, 여타의 아동·청소년법규, 기타 법규, 조례 등과 갈등은 없었는지), ⑧ 추가자문 필요성(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권리관련 추가적 조사나 자문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된다.

## 5) 평가방법

서울시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서울시 송파구 역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전 및 사후평가 중 심층영향평가 진행시 아동·청소년참여기구의 의견수렴시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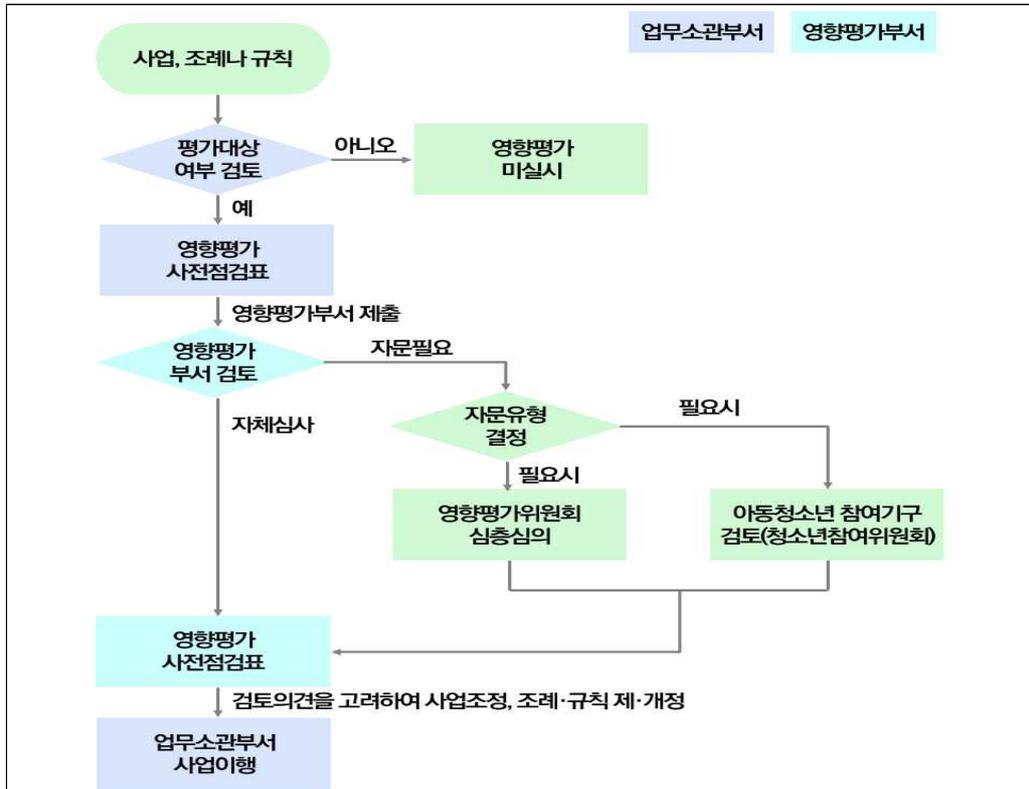
## 6) 평가시기

서울시 송파구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송파구 아동영향평가 절차를 사전 및 사후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아동영향평가의 절차는 기본평가지 총 4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그림 3-4〉 참조). 1단계는 소관부서 내 자체평가 단계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규칙, 사업에 대해 해당 책임부서에서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사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2단계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아동돌봄청소년과)의 검토 단계로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사전점검표」를 검토 후 「아동·청소년영향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등에 전달한다. 3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심층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판단하기에 아동·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는 사업,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참여기구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증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층 심의가 이루어진다. 4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 단계로 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반영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림 3-4〉 서울시 송파구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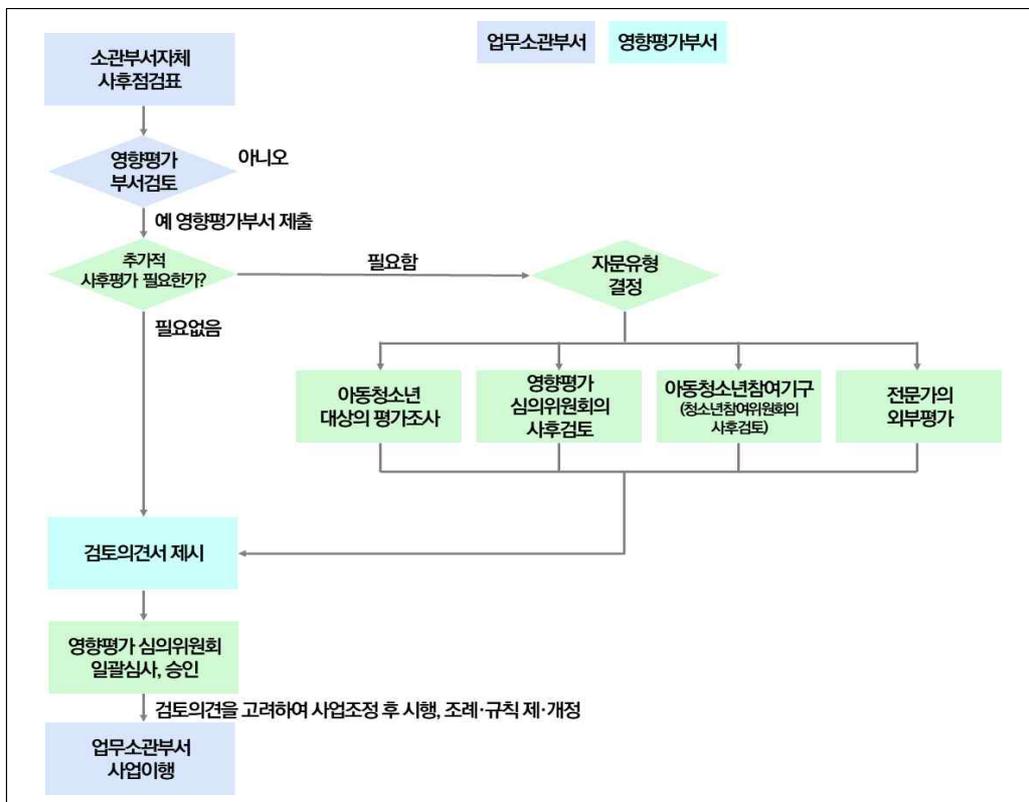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사후아동영향평가의 절차도 사전평가와 유사하게 총 5단계를 거쳐 시행된다(〈그림 3-5〉 참조). 1단계는 소관부서 내 자체 사후평가 단계이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책임부서에서 「소관부서자체 아동·청소년영향 사후 점검표」를 작성한 후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에 제출한다. 2단계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의 평가조사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사전 검토 시 해당 사업진행시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조사,

FGI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요구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부서의 검토단계이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는 「소관부서자체 아동·청소년영향 사후평가 점검표」를 검토 후 검토의견을 정리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등에 권고한다. 4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심층단계이다. 이 단계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사업별 아동·청소년영향평가를 진행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한다.

〈그림 3-5〉 서울시 송파구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절차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5단계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및 승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일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단계는 업무소관부서 사업이행단계로 업무소관부서에

서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한 후 시행하게 된다.

## 5. 서울시 종로구

### 1) 개요: 평가목적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평가 주체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사후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여성가족과),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수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심층영향평가를 운영한다.

### 3) 평가대상 및 범위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성북구와 동일하게 아동영향평가 예외 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예외 대상은 첫째, 구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셋째,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2016년에 실시한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소관부서에서 종로구 내 아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조례 및 규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동영향평가 소관 부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46개로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57).

#### 4)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서울시 종로구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평가는 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지표는 아래와 같다(〈표 3-7〉 참조). ①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UN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청소년 법규, 또는 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는지, ②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는지, ③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④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⑤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⑥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⑦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⑧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⑨ 기타 등이 포함된다(이영안, 2017b)

둘째, 사후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표 3-8〉 참조). ① 해당업무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은 없었는지, ② 해당업무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③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등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과의 관련성 여부, ④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 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성 여부, ⑤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등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이영안, 2017b).

〈표 3-7〉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 아동권리협약			
2) 아동청소년법규			
3)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2.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조고가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4.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5.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6.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8.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9. 해당 사업(계획, 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시시오.(전문가자문, 아동의견수렴 등)			

자료: 김주일·김아래미(2016).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용역보고서」

〈표 3-8〉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b>1. 아동권리 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b>			
1) 해당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b>2. 아동권리 관련</b>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b>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b>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b>4.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b>			
1)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2)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3)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구민		
<b>5.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b>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2)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자료: 김주일·김아래미(2016).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용역보고서」

## 5) 평가방법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다. 하지만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의 주된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주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 및 사후평가 중 심층영향평가 진행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FGI 진행,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수렴 등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 6) 평가시기

서울시 종로구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김주일·김아래미, 2016, p.39). 첫째,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총 6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아동영향평가 대상 검토 단계이다. 담당부서는 아동영향평가대상(조례 및 규칙·장기계획·단위사업)을 검토하고 아동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는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단계이다. 담당부서에서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3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심층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4단계는 사전심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단계로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한다(박금식 외, 2017). 5단계는 사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 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심층영향평가를 진행한 경우 이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6단계는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단계이다. 평가부서 검토의견 및 심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사후아동영향평가 역시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사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점검표 작성 및 제출 단계이다. 담당부서는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사항에 대한 자료 및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단계는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 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취합하며, 근거자료를 검토한다. 평가부서는 사후영향평가 점검표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3단계는 사후심층영향평가 단계이다. 평가부서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사후심층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FGI를 진행한다. 또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4단계는 사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심층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5단계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승인 단계이다. 평가부서는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일괄 취합하여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일괄 검토 후 승인한다. 6단계는 검토의견 반영단계이다. 담당부서는 평가부서 검토의견 및 심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6. 부산광역시<sup>3)</sup>

### 1) 개요: 평가목적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에서 수행하는 자치법령인 조례나 규칙,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평가 주체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 및 사후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심층영향평가를 운영한다.

### 3) 평가대상 및 범위

부산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자치법규와 정책 등으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3) 부산광역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박금식 외, 2017).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7년에 실시한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가 부산시 2017년 예산서를 바탕으로 아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영향평가 소관부서는 아동(18세 미만)이 직·간접적으로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세부사업(편성목, 통계목) 222개를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박금식 외, 2017, p.61).

#### 4) 평가 내용: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부산시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는 사전평가는 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①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UN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청소년 법규, 또는 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는지, ②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는지, ③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④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⑤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⑥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⑦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⑧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⑨ 기타 등이 포함된다(이영안, 2017b).

#### 5) 평가방법

부산시 아동영향평가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는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정량평가를 활용한다.

#### 6) 평가시기

부산시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산시 아동영향평가는 시범평가적 성격으로 다소 간소하게 진행되었다(박금식 외, 2017, p.58). 첫째, 아동영향평가 대상 검토 단계이다. 평가부서인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영향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둘째,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단계이다. 담당부서에서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는

단계이다. 넷째, 평가부서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단계이다.

〈표 3-9〉 부산광역시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 아동권리협약			
2) 아동청소년법			
3)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2.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조고가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4.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5.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6.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8.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9. 해당 사업(계획, 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전문가자문, 아동의견수렴 등)			

자료: 박금식 외(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을 위한 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과 제도, 예산 등이 아동권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제고, 나아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는 국내·외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10〉 참조).

스코틀랜드 아동권리 및 삶의 질 영향평가(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는 스코틀랜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입법 등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평가주체는 아동청소년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정책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관련 정책산출은 안전, 건강, 성취, 양육, 활동, 존중, 책임 및 소속 등이다.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절차는 최근 약간의 수정·보완을 통해 스크리닝, 아동권리복지평가, 아동권리복지평가의 승인 및 결과 공개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학술적·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확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아동영향평가 사례는 서울시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부산광역시의 아동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서울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강동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평가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어르신아동복지과)로 구분되며, ① 구청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③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체계의 경우 사전평가는 10개 평가지표, 사후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다.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지만 주된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이다. 평가시기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

둘째, 서울시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산, ②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참여 권리 보장, ③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개선함으로써 아동 정책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 실질적인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평가주체는 업무소관부서(담당부서)와 아동영향평가부서(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영향평가위원회로 구분된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중장기 사업계획,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평가체계의 경우 사전평가는 7개 평가지표, 사후평가는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며, 평가시기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셋째, 서울시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를 토대로 송파구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아동돌봄청소년과)로 구분되며,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이외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체계의 경우 사전평가는 8개 평가지표, 사후평가는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지만 주된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이다. 평가시기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

넷째,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평가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여성가족과)로 구분된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조례·규칙의 제·개정, 중·장기 사업계획,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체계의 경우 사전평가는 9개 평가지표, 사후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지만 주된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

이다. 평가시기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토대로 부산시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평가주체는 담당부서와 평가부서(아동청소년과)로 구분되며,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체계의 경우 사전평가는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평가방법은 양적 방법론이다. 평가시기는 시범 사업으로 사전아동영향평가만 존재한다.

〈표 3-10〉 국내 아동영향평가 주요 내용

구분	법적근거	평가 주체	평가 지표	평가방법	평가시기
서울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평가부서	사전평가: 10개 사후평가: 5개	혼합 방법론 양적 방법론(주)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평가부서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사전평가: 7개 사후평가: 8개	혼합 방법론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담당부서 평가부서	사전평가: 8개 사후평가: 8개	혼합 방법론 양적 방법론(주)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평가부서	사전평가: 9개 사후평가: 5개	혼합 방법론 양적 방법론(주)	사전아동영향평가 사후아동영향평가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담당부서 평가부서	사전평가: 9개	양적 방법론	사전아동영향평가

이상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영향평가 법적 근거와 관련해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시의 아동영향평가 개발시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직접적으로 제정하기 어렵다면,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아동영향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SCCYP는 법안·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9년 「아동복지법」 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영향평가 수행, 보급, 확산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 관한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연구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등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을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송이은, 2017, p.42). 이러한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영향평가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아동영향평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정책이나 사업, 계획, 조례나 규칙, 특정 프로젝트나 제안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정책 분야의 유관 법령과 사업, 계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우 아동영향평가의 평가대상뿐만 아니라 예외 대상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세분화시켰다. 이에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 범위 설정시 다양한 영역의 평가대상을 설정하면서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예외 대상으로 설정하여 아동영향평가의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혼합 방법론을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영향평가에서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서울 성북구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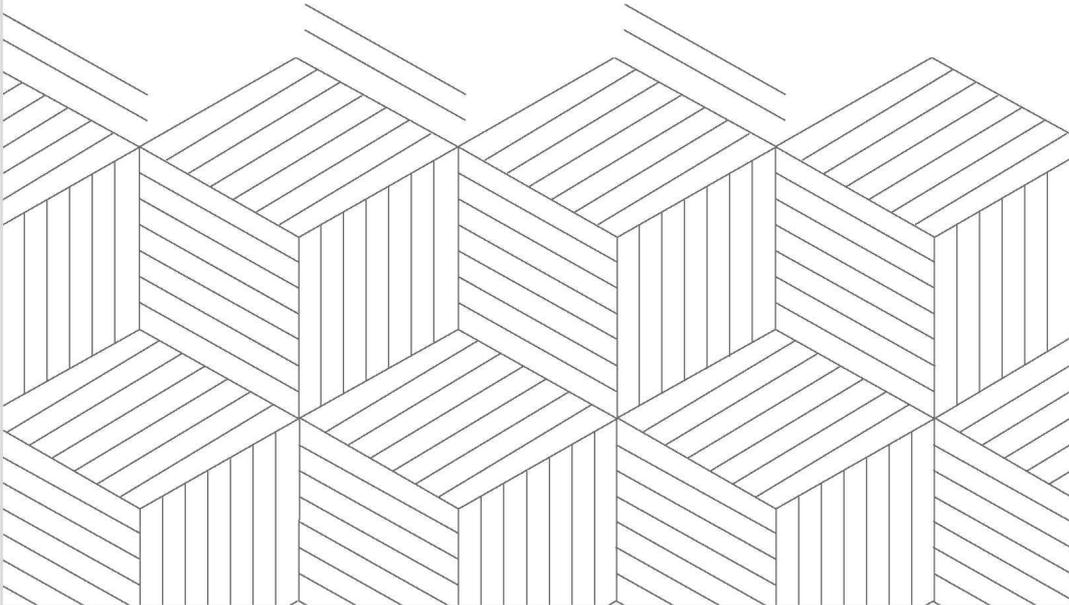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외한 서울 강동구, 송파구, 종로구의 경우 양적 방법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심층영향평가 필요시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 접근 중심의 혼합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의 경우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혼합한 혼합 방법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시기 측면에서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각 관계부서의 정책이나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다만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실제 정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시행 이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아동영향평가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제4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수행 과정
- 제3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 제4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개요

#### 1. 평가목적

아동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아동영향평가는 참정권이 없는 아동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요구(needs)를 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란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정책 영역들에서 수원시 아동의 기본 권리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송이은·최유정, 2018, p.139). 또한 정책 수요자인 아동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평가대상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및 범위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의 범위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의 방향 및 지표가 설정되기 때문이다(송이은, 2018, p.69). 일반적으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포함된다(박영균·조흥식, 2014, p.157). 이에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둘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셋째, 해당 연도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넷째, 그 밖에 수원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3. 평가유형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유형은 평가시기와 평가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가시기의 경우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한다.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의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등 사업의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이다.

둘째, 평가정도에 따른 구분은 일반아동영향평가와 심층아동영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아동영향평가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지 담당부서의 자체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심층아동영향평가는 사전 및 사후 아동영향평가지 부서 외 아동참여기구, 외부 전문가 등 심층적인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평가체계를 의미한다.

### 4. 평가주체

아동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또는 주관부서)를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송이은, 2018, p.75).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의 주체는 담당부서(또는 사업부서)와 평가부서(또는 총괄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의 경우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담당부서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평가부서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 보육아동과가 해당된다. 평가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평가표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평가방법

아동영향평가는 정책 및 세부사업이 아동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로만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송이은, 2018, p.78). 아동영향평가는 단일 방법(mono-method)이 아닌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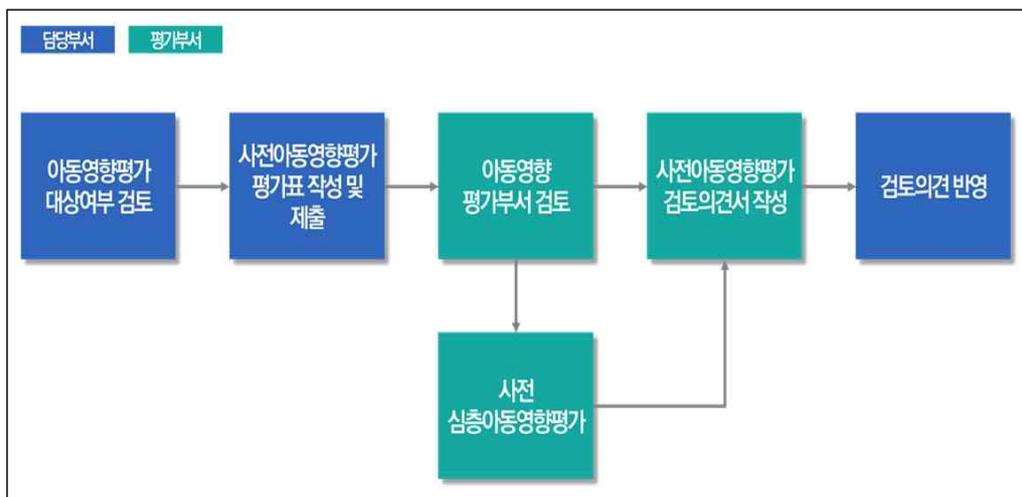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각화(triangulation)란 동일한 현상에 대한 하나의 연구에서의 방법론들의 결합을 의미한다(Denzin, 1978). 이에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는 방법론적 다각화 중 특히 방법 간 다각화(between-methods triangulation)를 적용하고자 한다. 방법 간 다각화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수행 과정

### 1. 사전아동영향평가

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사업 등의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사전아동영향평가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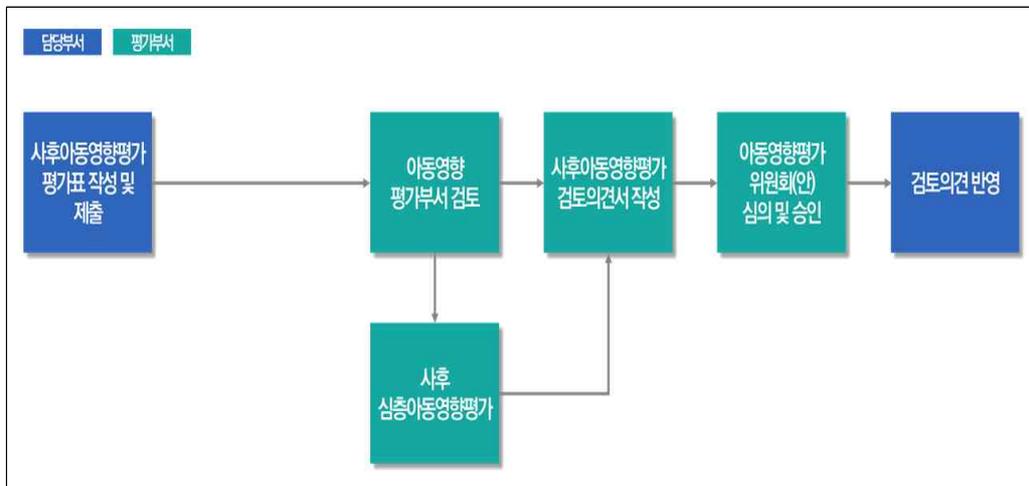
첫째, 아동영향평가 대상 검토 단계이다. 아동영향평가대상인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사업 등을 검토하며, 대상여부 검토 후 평가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둘째, 사전아동영향평가가 평가표 작성 및 제출단계이다. 정책 및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 단계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취합하고 심층아동영향평가 실시여부

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평가부서가 평가주체가 된다. 넷째,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 단계이다.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진행되는 과정이다. 정책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층영향평가 방법 선정 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단계로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가 존재한다면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평가내용 및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반영 단계이다. 이는 담당부서가 평가부서 검토의견 및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 2. 사후아동영향평가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사업 등이 종료된 이후 진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사후아동영향평가 과정 역시 6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 체계도



첫째,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표 작성 및 제출단계이다. 담당부서에서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둘째,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검토 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표 및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검토하는 단계이며, 심층아동영향평가 필요여부 또한 판단한다.

셋째,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 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정책 및 사업 내용 등 고려하여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 방법을 선정·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

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한다.

넷째, 사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단계이다. 평가부서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단계로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가 존재한다면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평가내용 및 과정에 대한 피드백의 내용을 검토한다.

다섯째,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심의 및 승인단계이다.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검토 후 승인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반영 단계이다. 이는 담당부서가 평가부서 검토의견 및 심층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 3. 심층아동영향평가

심층아동영향평가는 사전 및 사후아동영향평가 중 전문적인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평가이다. 심층아동영향평가 대상은 ① 해당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호한 경우, ③ 해당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 운영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④ 해당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 운영상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심층아동영향평가 방법은 상기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심층아동영향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이해당사자 대상 평가방법이다. 이는 해당 조례 및 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 등 아동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아동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FGI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검토의견서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둘째, 아동참여기구를 활용한 평가방법이다. 아동영향평가지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참여기구의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만 아동참여기구를 활용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심의 및 전문가 자문 평가방법이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권리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제3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의 참여에 대한 고려,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아동의 권리보장은 ① 아동의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②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③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참여는 ① 계획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②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③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는 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②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사전평가	담당부서:	과(        )	팀(        )
------	-------	-------------	-------------

관리번호:
-------

<b>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표</b>
----------------------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3. 평가시점	<input type="checkbox"/> 시행 전	<input type="checkbox"/> 시행 중	<input type="checkbox"/> 시행 후
사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 아동권리협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청소년 법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b>생존권</b>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b>보호권</b>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b>발달권</b>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b>참여권</b>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해당 사업·계획·조례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해당 사업·계획·조례를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해당 사업·계획·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9. 해당 사업·계획·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별지작성 가능>				

## 2) 평가부서

사전평가	평가부서:            과(            팀)	관리번호:
------	-----------------------------------	-------

## 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점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1) 아동영향평가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동권리 관련				
1)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 유형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계획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의 존재여부와 기능을 검토하고,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업무에 대해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사전/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업무가 아동권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전평가	평가부서:                      과(                      팀)	관리번호:
------	---	-------

### 수원시 사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검토 사항		검토 의견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 보충				
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갈등상황 조치				
3. 아동권리 관련 - 아동의 다양한 특성 고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 배제와 차별에 대한 조치 -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5.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 - 아동의 참여증진 조치 - 해당업무에 대한 홍보				
6.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 사전심층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층 심의, 아동참여기구 검토 - 사후심층영향평가,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참여기구 사후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 아동권리 증진 기대효과 평가사항				
기타 검토사항				



사후평가	담당부서:                      과(                      팀)	관리번호:
------	---	-------

###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표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b>1.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b>					
1) 해당업무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갈등의 내용					
<b>2. 아동권리 관련</b>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인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발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참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거 제시(ex.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결과, 자문 등)					
<b>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b>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배제 및 차별된 특정유형의 아동유형, 조치내용 제시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거제시					

사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b>4.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b>				
1) 해당업무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있었는가?	아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해당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해당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의견수렴 내용 및 장치				
3)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시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아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해당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대상별 홍보방식 및 실적 제시(ex. 홍보물, 웹사이트, 성과보고자료집, 보고회 등)				
<b>4.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b>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심층영향평가 방식 선택 및 자문내용 제시				
<input type="checkbox"/> 아동대상의 평가조사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아동참여기구 검토 <input type="checkbox"/> 외부 전문가 자문		▶ 자문 내용		
2)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동권리 증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 제시 (ex. 사업실적 및 통계자료의 사전-사후 비교, 설문 및 자문반영 등)				

## 2) 평가부서

사후평가	평가부서:                    과(            팀)	관리번호:
------	---	-------

###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후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점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b>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b>				
1) 아동영향평가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b>				
1)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3. 아동권리 관련</b>				
1)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b>				
1) 특정 유형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5.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b>				
1) 해당업무의 계획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의 존재여부와 기능을 검토하고,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업무에 대해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6. 사전/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b>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가 아동권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후평가	평가부서:                      과(                      팀)
------	---

관리번호:
-------

### 수원시 사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검토 사항		검토 의견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 보충				
2.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 아동권리협약 및 타 법규·조례와의 갈등상황 조치				
3. 아동권리 관련 - 아동의 다양한 특성 고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 아동권리 관련 근거자료 제시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 배제와 차별에 대한 조치 -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5.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 - 아동의 참여증진 조치 - 해당업무의 계획 및 성과 홍보				
6.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 사후심층영향평가, 아동 대상 평가조사,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참여기구 사후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 아동권리 증진 기대효과 평가 및 근거자료				
기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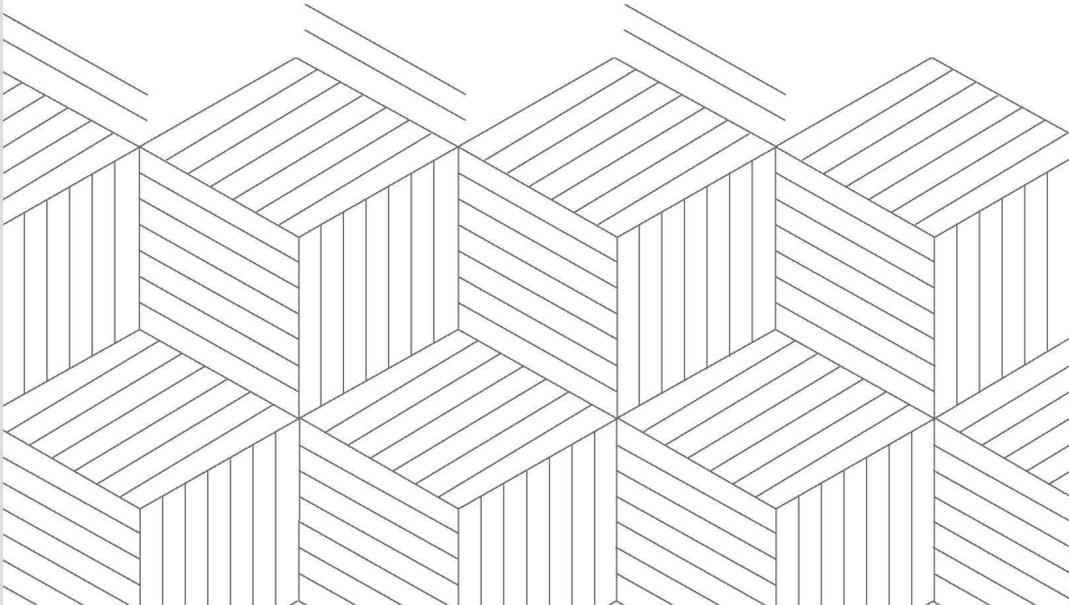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 제5장 수원시 2019년 아동영향평가 분석 사례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결과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제5장 수원시 2019년 아동영향평가 분석 사례

### 제1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개요

#### 1. 평가목적

수원시의 2019년 아동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분석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향후과제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평가주체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의 주체는 담당부서(또는 사업부서)와 평가부서(또는 총괄부서)로 구분된다. 담당부서의 경우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중·장기계획, 사업의 담당부서로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평가부서는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 수원시 보육아동과가 이를 담당한다. 평가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취합 및 평가, 검토의견 작성,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심층 아동영향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양식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주관하여 담당부서와 평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체의 다각화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평가주체의 다각화란 여러 명의 상이한 평가자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주체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하는 교차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 평가대상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조례 및 규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아동과 직접 관련 있는 수원시 조례 및 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사업은 2019년 수원시 업무계획서 및 2019년도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중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평가는 시범 평가의 성격을 지니므로 2019년 세부사업 중 간접적으로 아동과 관련 있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향후에는 수원시 차원에서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수원시의 아동 관련 사업 중 사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표 5-1>과 같다. 총 18개 세부사업과 2개의 조례를 선정하였다<sup>4)</sup>.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1개, 교육청소년과 3개, 보육아동과 11개, 안전통합센터 1개, 위생정책과 1개, 환경정책과 1개 등이다.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국 소속의 보육아동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사전아동영향평가 시기는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계획 및 사업의 경우 대상의 계획 수립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범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표 5-1〉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

구분	부서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및 디자인 운영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2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환경개선
3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지원(빛깔있는 수원형 혁신교육과정 운영)
4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건강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5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6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7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영·유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영·유아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영·유아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운영(교재교구비)
13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	수원형 우수어린이집 지원
14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15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	지역아동센터 운영
16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
17	환경국	위생정책과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8	환경국	환경정책과	친환경관리 기반조성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19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4. 평가지표

아동영향평가 평가내용은 제4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제시된 평가표 내용이다. 평가표의 구성 내용은 갈등사항, 권리보장, 차별요인, 의견수렴, 기대효과, 사후평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첫째, 갈등사항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둘째, 권리보장은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보호권은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은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이며,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셋째, 차별요인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아동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넷째, 의견수렴은 아동 의견수렴 및 아동 대상 홍보 등 참여 증진 노력 여부가 포함된다. 사업 등 계획 당시에 아동 및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직접 들었거나 부모나 교사 등의 욕구를 고려하였다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홍보의 경우 아동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친숙한 표현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단순히 시청홈페이지에 명목상으로만 홍보한다면 대다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대효과이다. 사전에 아동 관련 사업 및 정책의 기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보장될 수 있다면 기대 효과가 높다고 판단한다.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거나, 아동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제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5-2〉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표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표
----------------

기본사항	1.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3. 평가시점	<input type="checkbox"/> 시행 전	<input type="checkbox"/> 시행 중	<input type="checkbox"/> 시행 후	
사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 아동권리협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동청소년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이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해당 사업·계획·조례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해당 사업·계획·조례를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해당 사업·계획·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9. 해당 사업·계획·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별지작성 가능〉					

마지막 사후평가는 전문가 자문, 아동참여기구 검토 등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① 아동영향평가 사전점검표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간 사업액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③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5. 평가방법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단일 방법(mono-method)이 아닌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를 적용한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는 방법론적 다각화 중 특히 방법 간 다각화(between-methods triangulation)를 적용하고자 한다. 방법 간 다각화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자료의 코딩(coding)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 다각화를 시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 제2절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결과

### 1. 갈등사항: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조례 포함)이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표 5-3>과 같다.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법규,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등과 갈등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아니오’로 응답한 사업 및 조례가 100%(20개)로 갈등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갈등우려가 있는 사업(조례 포함)이 존재할 경우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시 아동권리의 침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표 5-3>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우려 여부

구분	갈등우려 없음		갈등우려 있음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UN 아동권리협약	20	100.0	-	-
아동청소년 법규	20	100.0	-	-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20	100.0	-	-

## 2. 권리보장

### 1) 아동권리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 조례 및 사업을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표 5-4>와 같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상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 등이 포함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 4가지는 상호 의존적이고 중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아동권리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조례 및 사업을 특정 하나의 권리가 아닌 복수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평가하였다.

아동영향평가의 20개 사업(조례 포함) 중 아동권리 분야는 발달권이 19개(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존권이 16개(80%), 보호권이 10개(50%), 참여권이 9개(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동정책 전반에서 참여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박금식 외(2017)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표 5-4> 아동권리 분석

구분	빈도(개)	비율(%)
생존권	16	80.0
보호권	10	50.0
발달권	19	95.0
참여권	9	45.0
전체	20	100.0

주: 비율은 전체 사업(조례 포함) 수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2) 아동 최선의 이익

권리보장 중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5-5>와 같다. 해당 사업(조례 포함)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에 관한 분석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업이 20개(100.0%)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5-5〉 아동의 최선의 이익 여부

구분	빈도(개)	비율(%)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함	20	100.0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하지 않음	0	0.0

### 3. 차별요인

해당 사업(조례 포함)의 특정 유형이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업이 20개 사업(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유형 및 아동을 배제하는 사업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표 5-6〉 참조).

〈표 5-6〉 무차별의 원칙 여부

구분	빈도(개)	비율(%)
배제하거나 차별함	0	0.0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음	20	100.0

### 4. 의견수렴

#### 1) 당사자의 의견수렴

해당 사업 수립시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모든 사업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업은 4개 사업(20%)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빛깔있는 수원형 혁신교육과정 운영),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모 및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은 20개 사업(100%)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수혜대상이 아동인 사업계획 수립시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구분	빈도(개)	비율(%)
아동 의견수렴	4	20.0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20	100.0

## 2) 홍보

의견수렴 중 홍보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5-8〉과 같다. 해당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모든 사업에서 홍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총 6개 사업(30%)인 반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총 20개 사업(1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아동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8〉 홍보 여부

구분	빈도(개)	비율(%)
아동 대상 홍보	6	30.0
이해당사자 대상 홍보	20	100.0

## 5. 기대효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표 5-9〉와 같다. 해당 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분석 결과 20개 사업 중 15개 사업(75%)이 아동권리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5개 사업(25%) 사업은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기대효과

구분	빈도(개)	비율(%)
상당한 효과 기대	15	75.0
약간의 효과 기대	5	25.0

## 6. 사후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필요성 분석 결과 <표 5-10>과 같다.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에 관한 분석 결과 20개 모든 사업에서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은 사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관담당부서 자체평가 또는 아동대상 평가조사, 전문가 외부평가, 아동참여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사후아동영향평가 여부

구분	빈도(개)	비율(%)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	20	100.0
사후아동영향평가 불필요	0	0.0

###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2019년 수원시 업무계획서 및 2019년도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중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과 조례이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18개 사업과 2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별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1개, 교육청소년과 3개, 보육아동과 11개, 안전통합센터 1개, 위생정책과 1개, 환경정책과 1개 등이다.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여성국 소속의 보육아동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 다른 법규 및 조례 등과 갈등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100%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에서 갈등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발달권이 19개(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존권 16개(80%), 보호권 10개(50%), 참여권 9개(45%) 순으로 나타났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진은 대상 사업 및 조례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향상에 대한 중복응답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권에 대한 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였는가에 관한 분석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업이 20개로 나타나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차별요인의 경우 해당 사업이 특정 유형이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모든 사업이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특정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의견수렴의 경우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 수립시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업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업보다 낮게 나타나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홍보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30%인 반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100%로 나타났다. 향후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한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대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20개 사업 중 75% 사업만이 아동권리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시 아동의 권리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성이다. 분석 결과 모든 사업에서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수원시의 2019년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중 아동과 관련성이 직접적인 사업(조례)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아동 관련성이 직·간접적인 사업(조례) 등으로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권리 중 참여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수원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 중 참여권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관련 정책 개발 및 운영시 아동의 참여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부모, 교사, 보호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동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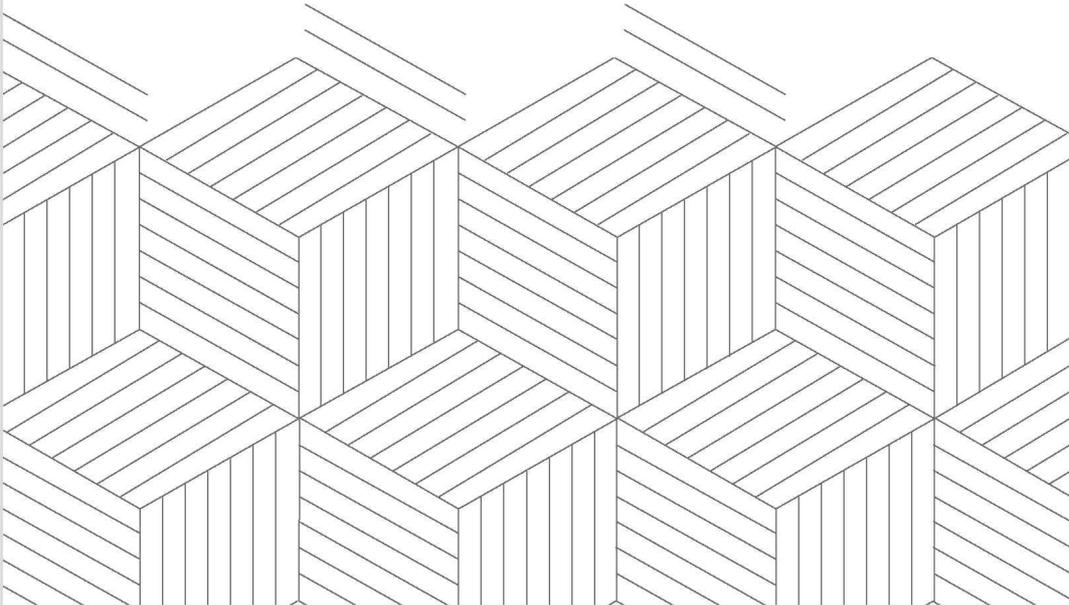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사업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을 고려한 사업 홍보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영향평가가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사업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나 SNS 등을 통해 친숙하고 접근 용이한 형태로 사업 홍보를 장려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 담당부서별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아동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물 아동과 관련성이 '직접'으로 분류된 사업 또는 조례 선정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과 관련성이 높은 보육아동과 및 교육청소년과 공무원은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으나 아동과 관련성이 '간접'으로 분류된 부서의 경우 관심 및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아동과 관련성이 낮은 부서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공무원 내부 협조는 아동영향평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효과적인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성이 '직접'으로 분류된 보육아동과 외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정착을 위해서는 수원시 공무원에 대한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전아동영향평가의 경우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로 주로 이루어진다.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상자는 단순히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수원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업무 특성상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원시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제6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

- 제1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제2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 제3절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제6장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발전 방안

### 제1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1.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영향평가 관련 법적 기반인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4년 5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군산시(2016. 10), 서울 강동구(2016. 11), 계룡시(2017. 12), 당진시(2017. 12), 완주군(2018. 3), 서울 송파구(2018. 4)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수원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원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는 「수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아동영향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원시만의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칭)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2. 아동친화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제도화

### 1)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아동영향평가와 연계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에 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대상 중의 하나는 사업예산이다.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는 법령과 사업의 내용은 물론 아동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유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친화예산제도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아동친화예산제도와 아동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원시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이다. 이에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수원시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아동친화예산서」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이나 사업을 가독성 높게 정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 및 아동권리 증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친화예산서는 해당 연도의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수혜대상, 연도별 예산 변동 추이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사용 및 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2)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계된 아동영향평가 제도 구축

아동영향평가는 수원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하나의 차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박금식 외, 2017, p.96).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아동권리 전담조직 설치,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의 참여, 아동 관련 예산 등의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3. 수원시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 영향평가와 아동영향평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는 인권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실시의 목적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있는 제도들이다. 하지만 다양한 영향평가는 중복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는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송이은, 2018, p.154). 이에 수원시 타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 1. 평가대상 선정

아동영향평가 대상 선정시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에 따른 사업, 조례, 예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 조례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나 사업, 조례, 예산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2.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제 마련

아동영향평가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동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아동 및 정책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의 1차적인 목적은 아동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권리주체인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영향평가 아동은 그 특성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며,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의견을 투입할 수 있는 채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동 관련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설립한 수원시 아동참여기구를 활용하여 아동영향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직접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고, 아동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리터러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둘째, 아동영향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완료된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이 정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 관련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아동영향평가 결과 이행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정책이나 사업, 법령 등에 관한 것과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안들이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 제3절 아동영향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 1.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

체계적인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의 공식적 참여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군산시와 당진시, 완주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수원시도 체계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안) 구성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칭)가 구성될 경우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아동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이외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등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확보

아동영향평가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와 담당부서 공무원의 아동영향평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의 경우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의 전 과정은 내·외부적 자문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수원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있다고 하더라도 1명만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에 박금식 외(201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팀 단위의 조직 구성 또는 동일팀 내에서 아동영향평가 전담인력 지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와 아동영향평가 교육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과 연관된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의 편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 등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의 내용 및 침해사례, 아동영향평가의 과정과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과 관련 없는 부서의 경우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동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은 평가부서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강현수 외(5인)(2012),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성북구청
- 김규수·서영미(2018),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3권 5호, pp.157-184
- 김기곤(2013),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정책적 수용 방안, 광주연구, 통권 23호, pp.49-66
- 김주일·김아래미(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서울: 강동구
- 김형완(2016), 인권의 제도화와 인권영향평가, 2016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시행5주년 워크숍, pp.43-52
- 남승연·이나련(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금식 외(3인)(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세경(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pp.62-72
- 박영균·조홍식(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영미(2016), 영유아 권리에 기초한 아동영향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2016~2018년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 서울시 성북구(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송이은·최유정(2018),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 영향평가체계 구축,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_\_\_\_\_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_\_\_\_\_ (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부(200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기준(지표)수립 방안 연구, 여성부
- 이발래(201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9권 4호, pp.157-195
- 이영안(2017a),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_\_\_\_\_ (2017b),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이홍재(1명)(2018),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pp.189-210

- 이영안 외(2인)(2019),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pp.23-52
- 이준일 외(4인)(2015), 경찰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경찰청
- 조홍식·염태산(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서울: 성북구청
- \_\_\_\_\_ (2016), 광명시 아동친화도시사업 연구, 경기: 광명시
- 한국인권재단(2016), 기업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 한국인권재단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옥경·김영지(2011), 아동을 위한 법적 발전 방향 연구. 아동과 권리, 15권 1호, pp.45-66

### 〈영문 자료〉

- Abrahams, Desiree and Wyss, Yann, (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 Baxewanos, F. and R. Werner, (2013)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s a New Tool for Development Policy? OFSE, Working Paper 37
- Bonwitt, B, (2001) Improving Policy Instruments through Impact Assessment, Sigma Paper, No.31, OECD, Paris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 Urbanizing World. London: Earthscan
- Corrigan, C, (2006)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ld Impact Statements in Ireland.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
- Denzin, N. K, (1978) The Logic of Naturalistic Inquiry. In N. K. Denzin(eds.), Sociological Methods: A Sourcebook. New York: McGraw-Hill
- Freeman, M, (1997) The Moral Status of Children: Essays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ague and Boston: Martinus Nijhoff
- Goldenberg, E. N, (1983) The Three Faces of Evalu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2, No.4, pp.515-525
- Hanna, Kirsten, Hassall, Ian and Emma Davis, (2006) Child Impact Reporting,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Vol.29, pp.32-42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15)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the Social Impacts of Projects
- Kriegar, Y. and E. Ribar, (2009)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of Economic Policies: A Case Study from Bosnia and Herzegovina.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Vol.19, No.2, pp.176-201
- Malone, K, (2004) UNICEF's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A Historical and Critical

- Review of a Global Program to Support Children in a Rapidly Urbanizing World, National Symposium on Child Friendly Cities, Griffith University, pp.28-29
- Mason, N. and K. Hanna, (2009) Undertaking Child Impact Assessments in Aotearoa New Zealand Local Authorities: Evidence, Practice, Ideas.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New Zealand
- Newell, (2003) Towards a European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 OECD, (2010) Guidance on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 Paton, L and G. Munro, (2006)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SCCYP Model.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Riggio, (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Vol.14, No.2, pp.45-58
- Scottish Government, (2019) When and How to Best Use the 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 (CRWIA): Guidance
- Sylwander, (2001) Child Impact Assessments.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
- Taskinen, S, (2006) Child Impact Assessment. Finnish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CEF,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13) Children's Rights in Impact Assessments. UNICEF and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Whalen, C., Kotze, G., and C. Pollack, (2015) Child's Rights Impact Assessment: A Primer for New Brunswick. New Brunswick Child & Youth Advocate
- World Bank and Commissioned by the Nordic Trust Fund, (2013)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Differences with other Forms of Assessments and Relevance for Development

#### 〈사이트〉

- 스코틀랜드 아동커미셔너(<https://www.cypcs.org.uk/about> 최종검색일자: 2019년 6월 1일)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 최종검색일자: 2019년 6월 1일)

### 〈법령〉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법

아동복지법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백서연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baeksy1212@naver.com

손보현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hyun17354@naver.com



